

韓國鑛業史序說

— 韓國產業史研究의 一齣 —

高 承 濟

目 次

第一節 李朝國家의 一般의 規定

- 一、分析視角의 設定
- 二、官人制度의 性格究明
- 三、田制改革의 檢討
- 四、兵制改革의 檢討

第二節 李朝產業政策의 性格規定

- 鑛業開發政 消極化의 究明을 爲하여 —
- 一、邊防政의 檢討

- 二、財政政策의 檢討
- 三、鑛業開發政 消極化의 檢討

第三節 李朝鑛業의 經營形態의 分析

- 一、官營鑛業의 性格究明
- 二、生産形態의 分析
- 三、召來鑛業勞働性質의 究明

第一節 李朝國家의 一般의 規定

一 分析視角의 設定

周知된 바와 같이 歐羅巴에 있어서 封建的生產構造의 崩壞에서 近代的生產構造의 形成이 始發된 것은 十五世

紀에서 十六世紀에 이르는 歷史期間이었다. 그리고 이런 生産構造의 近代的轉換에 있어서 毛織物工業의 發達이 그의物質的基盤이었다. 그런데 毛織物工業의 發達이 具現되기爲하이는 毛織物工業의 原料生産 部門과 生産手段生産部門의 均衡的發達이 要求되었다. 前者의原料生産部門에 있어서는 牧畜業의 發達이 綜制運動의展開로서 簡單히 說明하여 버릴 수 있으나 後者의生産要具生産部門의發達에關하여서는 다른 角 度로서 說明하여야 하겠다. 毛織物生産에 所要되는 生産要具로서 勿論 數 많은 種目을 헤아릴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原毛를 梳毛하는 것이 重要な 生産過程인 것으로 그때문에 所要되는 羊毛梳毛具 (Tool-Card)의 改良發達이 決定的으로 重要했다. ① 그런데 이羊毛梳毛具의製作에 必要한 金屬은 眞鍮와鐵이었는데 우리가 檢討의主要對象을 삼을 때는 英國에 있어서는 十六世紀前半까지는 거의 生産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所要量의大部分을 南獨等에서 南獨商人이나 和蘭商人의 손을 거쳐서 輸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梳毛具의供給을 確保하기 위하여 外國에서의輸入에 依存할 것이 아니라 그生産을 自國內에 確立하는 것은 毛織物工業을 基軸産業으로 展開하고 있는 英國의初期資本主義에 있어서는 絶對的인 經濟的要請이었으며 한결음 나가서 이런 梳毛具의生産에 必要한 原料獲得은 爲하여 銅 鐵의採掘과精鍊도 英國重商主義의 強力한 育成保護의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點에關하여서는 그當時英國王室의保護에서 創設되었던 特殊鑛業會社의 하나인 Company of Mines and Battery Works 는 처음부터 이會社의 諸種의活動은 羊毛梳毛具의製造에 中心을 두고 있다」는 뜻이 그經營方針의重點을 梳毛具의自主的生産體系의確立에 두어 왔음을 想起할 적에 鑛業의發達이 封建的生産構造에서 近代的生産構造에의 轉換過程에 있어서 미친바 影響이 그얼마나 根本的이고도 廣汎한가를 알 수가 있다.

한편 좀바르드는 「近代資本主義」속에서 近代國家는 血과鐵로서 만드러졌다. 近代國家의發展과 兵制의發達은 같은 概念이다라고 부르짖었으며 또한 軍事技術 더구나 武器工業은 特別記述을 要한다.

軍險의 大規模化 齊一한 武器 大砲의 巨大化는 資本主義的 工場을 要求하였다 고 하면서 近代의 生産構造의 始源을 衣料品工業의 發展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軍需工業의 發展에서 오히려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다

이 大膽한 쾰바르트의 規定을 英國의 歷史過程에 卽應하여 檢討한다면 거기에서도 近代의 生産體系의 確立에 있어서 鑛業의 發展이 이무운 歷史的 意義가 著大하였다 는 結論에 부닥치게 된다. 英國에 있어서 는 十五世紀以後에 絶對主義國家가 그 姿態를 나타내었는데 그리자마자 英國의 絶對主義王政은 對內的 으로나 對外的 으로나 錯雜한 軍事的 對立關係에 노히게 되었다. 假令 에리자베스女王 治世初期의 英國은 오면 佛蘭西의 對立關係를 아직 清算하지 못하는데다가 새로히 西班牙와의 날카로운 敵對關係를 大西 洋上에 나타냈다. 그리고 對內的 으로는 新敎對舊敎 英蘭對蘇蘭 에리자베스對메아터 등의 宗教的 對立 地 方的 對立 王室間의 對立等의 政治的 不安이 끊임없이 繼續되었던만큼 이때야말로 英國의 絶對主義王政은 興廢의 危機에 直面하였으며 또한 이 危機를 克服하는 길은 오로지 軍事的 裝備 軍事工業의 助長이 緊迫 한 課題로서 提起되었다.

그러면 英國에 있어서 近代의 兵器인 小銃 大砲가 使用된 것은 十四世紀에 들어서부터이나 그것은 南 獨逸其他大陸國家의 製品을 輸入한 것이었으며 英國에서 비로소 生産이 開始된 것은 겨우 一五四三年이었 다. 그後로 絶對主義王政은 海外技術者를 導入하던가하여 強力한 育成政策을 試行하였다. 그러나 이 小銃 大砲의 製造原料로서 鐵 銅 또는 Bell-Metal (銅과 錫의 合金) 등이 所要되었는데 가장 重要한 原 料인 銅의 生産은 에리자베스時代에 이르기까지 거의 閑却되었다. 그리하여 銅에 對한 需要는 언제나 南 獨逸에서의 輸入에 依存해왔으나 처음부터 需要未達의 狀態가 繼續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英國의 銃砲製造 는 原料基盤의 缺乏에서 決定的인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있어 英國의 絶對主義王政은 銅의 採

掘 精鍊의育成 助長이 軍事力強化라는 最高課題의達成에있어 不可缺의緊急事로 着眼하고 가장 精力的인 保護育成의諸般方途를 強行하였다. 그리하여 一五六〇年代에 이르러서부터 英國의鑛山業과 金屬工業은 自己土壤속에 뿌리를 깊이 박을수있었다.⑥ 이처럼 歐羅巴資本主義의 形成過程에있어서 鑛山業의發展이 어떠한 歷史的意義를 나타냈는가를 檢討하여오면서 우리는 歐羅巴社會에있어서 鑛山業이 發展한 契機는 (A)軍事力造出—武器工業—을 爲한 鑛山業의發展. (B) 生産手段生産部門에있어서의 生産力向上을 爲한 鑛山業의發展의 두가지에 要約되는바를 探索하였다. 그렇다면 鑛山業發展의 徑路는 李朝社會에있어서는 어떻게 進展되었는가. 萬若에 鑛山業의發展을 가져오는 이우가지 正常的 徑路가 李朝社會에있어서는 停滯했던가 歪曲되었던가하였다면 그처럼 停滯하던가 歪曲되지않을수없었던 歷史的 必然性이 무엇었던가. 이런 여러가지 問題를 解理解明하고자하는것이 第一章의分析에있어서의 우리의意圖이다.

二 官人制度的의 性格究明

일족이 二十二歲때에 高麗에 仕官하여 蒙古 女眞等에 數次에 걸쳐 出戰하여 東北面을 平定하기 에 武功을 세웠는가하면 한편 南方으로부터의 倭寇의侵掠을 殲滅하여 麗末王朝의 一大課題이었던 邊防強化을 홀로 解決지어 一代에 武名을 얻은 軍帥 李成桂에依하여 李朝國家가 武力的으로 確立된 것은 高麗恭讓王四年 明洪武二十五年 西紀一三九二年의七月七日이었다. 때마침 十四世紀에서 十五世紀에로 轉化하려는 바두 그 歷史過程이다. 이미 포스탈과같이 有能한 經濟史學者가 指摘하듯이 十五世紀라는 歷史過程은 歐羅巴社會의政治經濟史에있어 무거운 意義를 가진 時期이다. 그러기때문에 포스탈도 十五世紀는 經濟史上의過渡期가 아니라 轉換期이다. 라고 最高級の強調를 斷言하였다.

이미 十三世紀中葉以來로 解體過程에 들어간 歐羅巴制度는 14世紀에 들어가자마자 商工業의 農業에서의 獨立 都市의 農村에서의 分離 商品經濟의 確立은 背景으로 隸農은 賦役에서 解放하는 한편 封建地代는 貨幣地代의 形態를 가추면서 所謂 獨立自營農民 (Yeomanry) 誕生의 其盤을 整頓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十四世紀中葉以來로는 毛織物工業이 農村은 地盤으로 旺盛한 成長의 第一步은 내디었다. 이런 過程은 農業部에 있어서는 直接的 生産者에 의한 生産手段(土地)의 所有에 保有的 自由確保가 이루어졌고 工業部에 있어서는 勞働力과 生産手段의 分離가 이루어졌으나 이렇던 近代社會의 歷史的 前提가 세워졌다. 그리하여 十五世紀에 들어서 더구나 一四五五—一八五五년의 蕃穢戰爭을 契機로 分權的 勢力的 弱화 絶對主義國王에 依한 中央集權的 政治體制의 收束이 歸結되었다. 勿論 이 絶對主義는 獨立自營農民을 直接支配下에 두고 한편 身分議會를 自己努力에 從屬시키면서 常備軍과 官僚軍을 整備하기 에 있는바 精力을 投下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런 絶對主義王制에 依하여 近世歐羅巴社會의 鑛山業은 (A) 軍事力 造出—武器工業의 發達을 爲하여 (B) 生産手段 生産部門—毛織物工業의 生産 要其의 改良發達을 爲하여 絶對主義王制의 興亡을 나누는 産業政策으로서 精力的으로 그 發展이 保護育成되었다.

그러면 歐羅巴 社會에 있어서 絶對主義王制가 確立된 것과 거의 같은 時期에 出發한 李朝國家에 있어서는 鑛山業은 그 産業政策에 있어서 어떠한 시츄웨이를 차지하였는가. 이點을 分析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A)의 軍事力 造出—武器工業의 發達을 爲한 鑛山業의 發展이라는 歐羅巴的인 鑛山業 發展의 徑路가 東洋의 專制主義諸國의 一環을 찾아하는 李朝國家에 있어서는 어떤 轉捩點을 轉았는가를 밝히 고자 한다.

歐羅巴人에 依하여 東洋諸國家가 科學的으로 究明된 初期의 그리고 權威있는 著書의 하나인 「支那와

歐羅巴(英譯本 China and Europe London. 1925)의 著者 라이하나인(Adolf Reichnein)은 「支那에 關한 第一의 知識供給者는 제이스이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東洋에서 東洋을 보고 東洋이란 것이 意識된 것이 아니라 近代歐羅巴精神의 生成過程에 있어 미구나 一七世紀末葉에 東洋의 智識이 제이스이트派의 宜教師들에 依하여 媒介되어 歐羅巴의 인 것에 對한 東洋의 인 것의 特殊性이 觀察되는 從에서 비로소 科學의 빛으로 刻的 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表現한 것이다. 먼저 제이스이트는 「中國의 專制主義」라는 著書에서 中國을 비롯한 東洋諸國의 國家形態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卽 國家의 最高權力을 모조리 그 專制에 모인 專制君主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다. 하나는 合法的인 開明的 專制君主이고 다른 하나는 非合法的인 恣意的 專制君主이다. 그런데 中國은 이런 理想的인 開明的 專制君主의 統治形態를 나라라고 하면서 이 專制사나마나 東洋諸國은 專制主義의 國家形態로 理解하였다. 다음에 보우테루(Voltaire)은 「中國에 關하여」(De La China)라는 論說에서 「人口가 많고 廣汎한 中國帝國은 이미 한 家族처럼 統治되고 있다. 그리고 皇帝는 家長이고 四十個 官廳의 官人은 家兄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하고 歐羅巴의 인 分割統治에 對比하여 東洋諸國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專制君主에 依하여 것처럼 人口가 많고 廣汎한 國土가 한결같이 統治되는 從에는 官人의 役制이 著大한 바를 暗示하고 있다.

이제 이런 두가지 殊朴한 見解를 統合한다면 다음과 같은 整頓된 見解體系를 抽出해낼 수 있을 것이다. 東洋의 封建社會는 歐羅巴의 人 封建制度의 範疇에서 一步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東洋諸國에 있어서는 아세아의 專制主義의 特殊性이 附與되어 그 때문에 特殊한 封建社會機構가 構築되었을 뿐이다. 그리면 그 特殊의 根源의 人契機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세아의 專制主義와 관련 有力한 支配勢力을 構成하고 있는 官僚機構 또는 아세아의 官人制度(Mandarinism)가 強固히 結合되는 從에 있으며 따라서 東洋諸國은 專制君主에 依하여 統治될 뿐만 아니라 「王의 눈(眼)이요 귀(耳)이요 팔(腕)인」 官人에 依하여 二重으로 支配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視野를 아세아의 官人制度의 究明에 集中하여 본다면 近世歐羅巴社會에 있어서의 官僚制度(Bureaucracy)나 東洋諸國에 있어서의 官人制度라는 그發生系譜를 辿리고 있다. 卽 歐羅巴社會에 있어서의 官僚制度는 中世에서 近代에의 過渡期인 絕對主義段階에 있어서 行政的分業化를 骨幹으로 行政技術中心으로 이루어진 官吏의 組織體系化에서 나온 것이나 東洋諸國에 있어서 孤立分散하여 相互로 共通한 利害關係를 갖지 않는 血緣共同體이고 地域共同體의인 村落共同體를 假令 治水工事라던가 其他의勸農策의施行을 爲하여 全體的關聯을 結成하고 지하는 데에서 나왔다. 따라서 東洋諸國을 專制的 官人國家라고 부르려면 強大한 支配力을 가진 官人制度는 이 때까지나 東洋的 國家가 單純素朴한 自給自足の 半零細的農業生産을 反復하는 村落共同體를 自然的基礎로 그우에 聳立하였다는 基本的特殊性을 覓으리지 않으면서 村落共同體相互間의 孤立性을 止揚하려는 制度的措置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히 問題를세우고자 하는 것은 東洋諸國에 있어서의 官人制度는 官人登用의 考試制度인 科擧制度에 依據하여 이루어지고 科擧制度에 依據하는 官人制度야말로 東洋諸國의 社會政治機構의 가장 特徵的 脊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科擧制度 運營의 規準은 儒敎的 經學이다. 그렇다면 官人支配制度를 가장 特徵的 脊骨로 하는 東洋的 社會政治機構에 있어서는 儒敎의 學習者가 그런 社會的政治機構의 唯一한 專斷的 運營者인가 따라서 그런 社會的政治機構의 運營에 있어서는 軍人的 機能 또는 軍事的 要素는 全然 缺如되었던 것인가. 이점이 銳利하게 究明되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는 것이다. 十七世紀末 葉以來 歐羅巴人에 의한 東洋諸國에 관한 諸著書中에서 하르트(D. H. Hart)의 中國帝國全誌(Description of La China)가 主柱的 著書로서 보루테엘 케에이 몬테스큐等的 東洋關係著書도 이 著書의 內容을 指標로 叙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르트는 前記의 著書中에서 中國은 다사리는 것은 混棒이라고 하였다. 또한 몬테

스쿠도 그의 「法의精神」이라는著書의 「中國帝國論」에서 「政府는 언제나 鐵腕을 내흔들으므로 百姓을 威嚇하며 百姓을 恐怖케함으로서 그들을 屈從케한다」라고하였다. 여기에 있어 하르드 몬테스큐는 다 같이 東洋諸國에 있어서 專制主義가 비로소 可能한것은 그어떤형의實踐이 있었기때문이라는點을 暗示 하고있다.

이點에關하여 윌트포오게르도 그의 「東洋的社會의 理論」이라는論文속에서 그의見解를 表明한바가 있다. 그는 理論에서 東洋的社會의 社會的存機體의 核心的構成을 解明한다고하면서 問題究明의焦點을 「東洋的專制」(Orientalische Despotie)의 分析에 두면서 그分析을 遂行해나가는데있어 東洋諸國의 官人制度의 解明에다 보다더 壓縮된焦點을 設定한다. 그리하여 윌트포오게르는 東洋諸國의 官人制度를 解明하는데있어 官人의性質如何의問題를 重要視하면서 그問題에對한 科學的解答을 求하기爲하여 官人의性質은 官人의職能如何로서 規定되는만큼 官人의職能을 武事的職能과文事的職能으로 籠攝的으로 區分하여 官人의 武官的要素와 文官的要素의 比率關係如何로서 東洋的社會의諸特質을 그때그때로 捕着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東洋諸國에있어서 武官的要素와 文官的要素의 比率關係가 그때그때로 變化하는것은 所與의東洋的 複合體가 그속에서 生活하는 國際的情勢如何로서 規定된다는것이다. 이제던 여기까지의 見解에있어서 윌트포오게르는 東洋諸國의 官人制度가 儒敎의學者者를 卽 文官的職能의官人에依해서만 專斷的으로 運營되는것이아니라는點과 그뿐만아니라 그때그때의 國際情勢如何에따라서 武官的要素가 壓倒的地位를 占여할수있다는點을 實證하기에 成功하였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以上에 概要的으로呈示한 윌트포오게르의見解에對하여 두가서 疑問點은 提起하지 않을수있다. 첫째의疑問點은 윌트포오게르는 武官的要素와文官的要素는 國際的情勢如何로서 하에에는 文官的要素가 壓倒的이다가 다른때에는 文官的要素는 退潮하고 武官的要素가

武官要素의 律動이 極端에서 極端에 이르는 그런 따위의 變動이 果然 하르드와 몬테스키우가 暗示하듯이 混棒과 鐵腕을 휘둘리는 專制主義的 國家體制 밑에서 可能할 것인가. 오히려 專制主義的 國家體制 밑에서는 內政面에 있어서 鎮壓의 諸任務를 다하고 對外政治面에 있어서 軍事的 諸職能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官人의 武官的 職能을 國際情勢如何를 超越하여 恒時的으로 要請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편 文、武官人 할 것 없이 官人一般의 物質的 基盤을 確固히 하고 또한 武官的 職能遂行에 있어 缺如할 수 없는 軍糧의 確保를 爲하여 官人의 經濟的 職能 다시 말하면 文官的 職能도 武官的 職能과 可分離的이 아니라 不可分離的으로 恒時的으로 要請되는 것이 아닐까 다만 國際情勢如何에 따라서 武官的 職能이 平時程度以上으로 重要視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規定하다면 文官的 要素는 武官的 要素에 비하여 本質的으로 過少한 比率를 갖는 것은 아니나 그때 그때의 國際情勢如何에 따라서 外國에 對한 軍事活動의 實踐 또는 外國의 軍事的 壓力에 對한 防備를 爲하여 武官要素가 優位的 比率를 갖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물체의 疑問點은 너그럽게 보면 첫째의 疑問點과 同一한 系列에서 論議되어야 할런지 모르나 윗드보 오게르은 中國의 專制主義를 歷史的으로 세 段階로 나누면서 第一段階에는 文官的 要素가 優位하였고 第二段階에는 武官的 要素가 壓倒的이었고 第三段階에는 文官試驗制度인 科擧制度가 樹立된 以來로는 文官的 階層이 統一된帝國에 對한 指導權을 最後決定的으로 掌握하였다고 斷定하면서 科擧制度에 依據한 官人制度에 있어서는 儒敎의 學習者인 文官的 階層이 東洋的 國家機構의 運營을 專斷하였다고 結論짓고 있다. 이것은 中國自體의 歷史的 實情에 빛이 어보더라도 너무나 輕卒한 斷定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하블은 東洋的 封建生活圈內에 있어 弱少한 國際的地位에 始終하였고 따라서 強大한 隣國의 軍事的 壓力에 對한 防備에 餘念이 없었던 李朝國家에 있어서는 容納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두가지 疑問點을 李朝國家의 歷史的 實情에 適應하여 보기로 하겠다.

三 田制改革의 檢討

李朝國家가 그 國家體制을 再編成함이 있어 田制改革과 兵制改革을 所謂 王業의 二大課題로 삼았다. 그 때면 李朝國家로 하여금 國家體制再編成의 焦點을 軍事的 財政的改革에다 設定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새로운 露靜의 根據는 어찌 있었는가 그것은 高麗朝가 그 封建的 軍事編成의 脆弱性은 남김없이 暴露하지 않을 수 없었던 原因이 土地制度의 腐朽化에 있었던 만큼 高麗朝의 兵備를 再編成 再裝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軍事的 財政的改革이 斷定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李朝國家의 官人制度에 底流하고 있는 性格을 把握하기 위하여 그 國家體制를 再編成하는 課業에 있어 焦點的位置를 자리잡고 있는 田制, 兵制의 二大王業 다시 말하면 軍事的 財政的改革을 檢討함으로써 바루 앞에서 提起한 課題에의 解答을 構築하기로 하겠다.

먼저 田制改革부터 檢討하기로 하겠다. 그런데 李成桂에 의하여 斷行되었던 田制改革의 意義를 正確히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그로 하여금 田制改革을 建國의 最大急務로 그것의 時急한 斷行을 促求한 高麗의 大司憲이며 李成桂의 智謀인 趙浚의 建議書를 吟味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三韓에 旣히 田制를 定하여 臣民에 分給하였읍니다. 百官은 그 品에 視하여 이를 給하여 身이 浚하며 이를 收하였읍니다. 府兵은 二十이 되어 授하고 六十이 되어 還하다. 매저 士太夫로 川을 받았다가 罪있으며 收하니 사람마다 自重하고 敢히 法을 犯치 않으며 禮儀가 興하고 風俗이 美하였던 것입니다. 府衛의 兵 州郡津驛의 吏 서로 그 川에서 먹고 土着業을 즐기니 따라서 나라가 富強하였읍니다. 遼, 金은 天下를 虎視하고 우리와 接壤하고 있다 라도 敢히 呑噬치 못하는 것은 我太祖께서 三韓의 地를 分하여 臣民과 더불어 그 祿을 享하고 그 生을 厚케 하고 그 心을 結하여 國家千萬世의 元氣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以來로 閑人功蔭授

化하여 領에 물어 加給 補給 登料 別賜의 名目으로 代代로 增益하니 舜田의 官은 煩瑣에 堪지 못하
 여 授田 收田의 法이 漸次로 弛를 致하였읍니다. ... 已히 仕하고 已히 嫁한 者가 아직 閑人의 田을
 食하고 行伍를 踐지 않은 者가 軍用을 冒食하며 父가 匿挾하여 私히 子에 授하고 子는 隱盜하여
 公에 還지 않습니다. ... 祝乘의 授田 收田의 法은 旣히 毀하여 兼併의 門이 열어 宰相이 되어 當然히 田
 三百結을 受해야 할 者가 一族이 立錐할 만 한 땅은 얻어 본 일이 없었으며 宰相이 되어 當然히 祿 三百
 六十碩을 受해야 할 者가 아직 二十碩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兵은 王室을 衛하고 邊處에 備하는 者입니
 다. 그런데 國家膏腴의 地를 割하여 그로서 四十二 卽府의 甲士 十萬餘人을 祿하고 衣服類 機械가 모
 두 田에서 나오니 國家에는 養兵의 費가 없읍니다. 祖宗의 法은 三代 兵을 農에 藏하려는 遺意에서이다.
 이젠 즉 兵과 田은 다 같이 亡하였읍니다. 倉卒에 至할 때 마다 農民을 뽑아 나서 兵을 補하는 故로 共이 弱
 하여 敵에 餌하고 農食을 나누어 兵을 養하는 故로 戶가 削하고 邑이 亡합니다. 祖宗至公分授의 田
 이 一家父子의 私하는 바가 되고 말았읍니다. 한번 門을 나서서 朝廷에 仕한 일이 없고 한번 밭을 울러
 軍門을 蹈한 일이 없는 者가 錦衣玉食하고 앉아서 公卿을 蔑視합니다. 그뿐 아니라 關
 國功臣을 잊어 夙夜로 侍衛하는 臣이거나 百戰勤勞의 士가 오히려 一畝의 食 立錐의 耕이니 따라서 그
 父母妻子를 養할 수 없읍니다. 무엇보다 忠義에 勤한 것이며 事功을 實한 것이며 戰功에 勵한 것이며
 外侮를 禦할 것입니까? ... 臣等이 願하옵건대 聖祖至公分授의 法에 遵하여 後人으로 私授兼併의 弊를 革
 하고 土가 아니고 軍이 아니고 國役을 執하는 者가 아니면 田을 授하는 일이 없으며 其身이 終할 때까지 私
 私로 相授하는 일이 없도록 嚴히 禁限을 세워 民과 더불어 更始함으로써 國用을 足케 함으로서 民生
 을 厚케 함으로서 朝臣을 優케 함으로서 軍士를 勵케 하면 반드시 나라가 富하고 兵이 強하고 禮儀가
 興하고 廉恥가 行하여 人倫이 밝아지고 詞訟이 息하고 社稷의 基가 磐石보다 安하고 太山보다 壯

하여 國家의威가 雷霆을 震하여 炎火보다 熾한이며 外侮가 있더라도 스스로 禦한 것입니다. ⑩
 以上の引用으로서 우리는 田制改革이 어떻게 提起되었는가의 內的契機의一端을 다름아니라 田制改
 革을 國난에게 命가부게 降된 提起者 自身の 말로서 손쉽게 把握할 수가 있다. 卽 高麗朝가 新鮮한
 空氣를 攄인 미이라처럼 허무러진 것은 國家體制가 弛解한 때 그 原因이 있었고 그처럼 高麗朝의 國
 家體制가 弛解한 것은 그 軍事編成이 脆弱했기 때문이며 그特殊한 表現으로서는 官人制度가 弛解한 때
 그原因이 있었고 官人制度의 弛解는 土地制度의 無秩序化(公田의 廣汎한 隱結化)에 그原因이 있었다. 그
 러므로 李朝國家로서는 軍事編成의 強化를 建國의 基幹課業으로 삼어야 할 것이며 그되기爲해서는 軍事的
 改革과 不可分離인 官人制度의 結合되어 있는 財政的改革 卽土地制度의 強力的인 再編成이 斷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李朝國家에 의하여 強力的으로 斷行되었던 田制改革은 첫째로 隱結田의 查收
 查得에 둘째로 科田制에 의한 文武官人에對한 公平한 分給에 標的을 두었던 것이다. 田制改革의 첫째
 標的인 隱結田의 查收 查得이 그렇거나 徹底히 斷行되었는가는 高麗朝 辛昌以前の 田結總數가 不過
 五十乃至六十萬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量田事業의 完了後에는 百二十六萬結로 二倍以上으로 增加되
 었던點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둘째 標的인 全官人에對한 土地分給策인 科田制가 또한 그
 일이나 徹底히 斷行되었는가에關해서는 몹소 李朝時代의 土地制度를 調査한 日本人의記述에서도 그
 片鱗을 엿볼 수가 있다. 「全國의土地所有를 全國的規模에 있어서 集中統一하고 (境內의田)을 打量하여
 「上郷의田 國川軍資의田 文武役科의田」等을 定하고 開良으로 京城에 있어서 王室을 防衛하는者 寡
 婦로서 守節하는者 關驛津渡의吏로부터 庶民王匠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工役을 執하는者에게는 모조
 田 土地를 班給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官人制度의 強化를 主導的條件으로 斷行되었던 田制改革은 그必然
 的歸結로서 國王의 全國的規模에 있어서의 土地所有關係가 確立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아세아의 農業秩序

가 確立되었던것은 再論의餘地가없다. 그런데 注意깊은讀者는 이미 觀取하였을바이나 李朝國家에依하여 斷行되었던 田制改革에있어서 다같이 官人이라고하더라도 더구나 武職的官人의士氣振興과 軍資調達策으로서의 土地代徵收의必要等の 軍事的에페멘트가 排他的으로 高調되어있는點은 여기서 看過할수없으며, 또한 輕視할수없는 무거운意義를 가진事實이라고 아니할수없다.

또한 아메리카의크네크(E. K. Kneke)教授는 最近 東洋的官人制度形成途上の 키이 페티오르(Key Period)의 宋時代의 官人制度를 體系的으로 分析한「前期宋國家의文官服務」(Civil Service in Early Sung China, 960-1067, 1953)를 發行하였다. 아마 西歐學者에依한 東洋的官人制度에關한 專門的分析으로서는 開拓者의位置를 찾아하는 力作이라고 讚揚하지않을수없는바 그곳에서 크락코教授는 文武官의限界에關하여 다음과같이 論斷하고있다. 文武官의限界는 官制上으로 嚴格이 區劃되어져있으나 實際에있어서는 漠然하다. 첫째로 軍務院의主務官은 武官中에서 選任될적도있으나 흔히 文官中에서도 選任된다. 둘째로 武官은 軍隊指揮의任務에만 從事하는것이아니라 政府要員의 職責도 맡아본다. 셋째로 中位以上の職位에 올머서부터는 같은 官人의文官에서 武官에도 또는 武官에서 文官의 交替的轉職이 자주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論斷해내려가다가 크락코教授는 官人制度에있어서의 武官의에페멘트의 優位性을 文武官人數의比率로서 暗示하고있다. 卽 宋나라初期에는 武官數는 文官數보다 劣勢했으나 中期에 이르러서는 急激히 增加하였다. 가령 一〇三三年—一〇三二년에는 武官數는 文官數에 比하여 四千名이나 적던것이 一〇四二년에는 六千名이나 보다더 많아졌다고한다.

그런데 크락코教授의論斷은 그당그대로 李朝國家에도 適用된다. 먼저 李朝의 代表的官人인 皇甫仁 申叔舟, 金宗瑞, 具致寬, 柳成龍等の 官人經歷을 따져보기도하자.

가, 皇甫仁 太宗甲午에 文科에合格하여 文官으로 服務하다가 世宗朝에 들어 北道體察使로 武官에

로 轉職하여 北道防備에 盡力하였다。世宗晩년에는 國王의 軍事顧問의 一이 되다가 左
贊成에서 入相하였다가 文宗壬申에는 領議政을 지냈다。⑬

나, 金宗瑞

太宗乙酉에 文科에 合格하여 文官으로 服務하다가 世宗朝에 들어 咸吉道都節制使로 武
官에 轉職하여 文領開拓에 功을 세웠으며 平安道都節制使로 지내다가 文宗朝에 들어
左議政을 지냈다。⑭

다, 申叔舟

世宗戊午에 壯元進士를 지내다가 己未에 文科에 登第하여 外交使臣로 지내며 海東諸
國記 正音通考等を 著述하는 文官으로서의 機能을 마음껏 發揮하다가 드디어 直提學으
로 되었다。世祖朝에 들어서서 大提學에까지 올랐다가 兵曹判書로 武官에 轉職하여 平
安道都節制使를 지내다가 다시금 右議政과 左議政을 지냈다。구려다가 江原道都察使로
武勳을 세웠으며 드디어 領議政을 지냈다。⑮

다, 具致寬

世宗乙酉에 進士를 지내다가 甲寅에 文科에 登第하여 文官으로서의 資質이 認定되어
翰林으로 들어갔다。下僚로 十餘年을 徘徊하다가 大用되어 「緩城府院君」의 稱呼를 받았
다。世祖朝에 들어 領議政까지 지내다가 때마침 北邊防備가 緊急해지매 武官으로 轉
職하여 大將軍으로 北邊防備에 盡力하였기 때문에 國王은 그를 「나의 萬長城」이라고 자
랑하였다。⑯

마, 柳成龍

李退溪 밑에서 배우다가 明宗甲子에 進士가 되었으며 丙寅에 文科에 登第하였다。翰苑
에 빠져서 書狀官으로 明나라에 갔다가 宜祖甲申에 禮曹判書로 되었다가 乙丑에 右
議政 二年後에는 左議政을 지냈다。壬辰에 日軍이 侵入하자 兵曹判書를 兼任하여 軍
務를 總治하였으며 스스로 都體察使로서 日軍防禦에 盡心하다가 宣朝와 더불어 北遷

하여 平安道都體察使 或은 三南의 都體察使로 繼續하여 武官으로 服務하여 癸巳에 還 都하자 領議政이 되었다. ㉔

이처럼 李朝時代의 代表的官人들의 個人經歷을 概括적으로 살피드라도 文科에 登第하여 文官으로 서 上昇을 거듭하다가는 갑작이 武官으로 轉職되어 그곳에서 「武功」을 쌓도록 上昇을 이루면 다 시금 文官으로서의 最高位階에 到達하고만다. 더구나 文官으로서의 最高位階에 오른 官人이 職位의 高下를 不顧하고 緊急한 軍務에 오래 滯留하였다는 여러 官人의 걸쳐서 고루히 찾아볼수 있는 事實은 官人制度의 實際的進展이 文官의 에베멘트에 對하여 武官의 에베멘트가 漸次로 比重을 더하여가는 方向으로 달리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文官對武官의 數量的比較의 課題가 아직 解明하기에 着手되지 않았으나 아마 여기에서 試行하기보다도 다음의 兵制改革의 檢討에 있어서 適當한 位置가 發見되는 데도 하기로 할 것이다.

三 兵制改革의 檢討

佛蘭西의 사두루七世에 依하여 確立되어(一四三九年의 勅令 Ordonnance sur la reformation) 그後 二百年間에 全歐羅巴에 導入되었다고 하는 近代兵制 그 것을 通念대로 常備集團의 制度라고 理解하고 더구나 近代兵制確立의 歷史的意義를 騎士라고 부르는 封建家臣國에 所屬했던 軍隊를 國王에게 直屬케 하는 데서 찾아낸다면 李朝國家의 依하여 田制改革과 並行하여 斷行되었던 兵制改革은 時期的으로 若干 앞섰던 것이나 歐羅巴에 있어서의 近代的兵制와 비슷한 形態와 性格 밑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高麗時代에 있어서도 東洋的專制政治形態의 強化를 爲한 武力裝置로서 全國皆兵의 兵制가 編成되어

二十歲에서 六〇歲에 이르기까지 舉子(科舉應試者)를 除하고는 말갓인자는 神騎兵으로 그렇지않는者는 神步兵으로 모조리 軍籍에 자리잡지않을수있었다. 그러나 高麗朝의 中葉以後 더구나 毅宗 明宗以後에는 軍政은 國王에서 大土地所有者인 一聯의 封建家臣團이 專斷하는바되어 그야말로 나라에는 一旅 伍의卒이 없으며 將은 모두가 私家の將이오 兵은 모조리 私家の兵이 되고말았다.

그리하여 李朝國家가 成立되자마자 兵制如何야말로 國家의力量을 測定하는 槓杆이라고하여 國家體制再編成의 礎石으로 兵制改革의 斷行에 着手하여 定宗二年에 完成되였다. 그런데 이처럼 斷行되었던 兵制改革이 封建家臣團의 私兵의廢止에 뒤있는 常備團的國軍의創設 卽 私兵禁斷令을 實踐하려는 데서 이루어졌다는것은 權近과 金若采의 兵制改革에關한 上疏文에서 남김없이 把握할수가 있다.

權은 나라의 大柄임으로 마땅이 國王의 直屬되야 할것임이다. ……兵을 典하는者가 많으면 많으수록 서로 徒黨을세워 그 마음이 달리지며 그 힘이 갈리지않을수 없읍니다. 혼히는 서로 猜貳하여 禍亂을 이르고 同氣가 相殘하니 功臣을 오래 거누릴수없는 理由가 여기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古言을 結친 通思이엿읍니다. — 我太上王께서는 開國하자마자 義興三軍府를 設置하고 오로지 兵權을 握하섯으니 그規模가 宏遠한바있었읍니다. 그런데 몇몇사람이 議論하기를 때마침 革命初期인만 큼 아직 人心이 平定되지않았으니 마땅이 不慮의變에 가추는바있어야할것이니 勳親者로하여금 私兵을 거누리게하여 倉卒의 對應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그때문에 私兵을 모조리 없이할수없었읍니다. 그러하여 兵을 거누리는者는 反亂을 謀扇하여 禍害가 헤아리지않는곳에있었읍니다. 이로써보건대 私兵을 두게한다는것은 亂을 이르킬뿐이지 利益되는바를 볼수없었읍니다. 그런데 私門의兵은 아직 없이지지않고있으니 將來에 禍害있을것이 憂慮되어마지안읍니다. 더구나 地方에있어서는 各道의軍馬를 나누어 諸節制使에 所屬시키고 或은 侍衛라고 부르던가 或은 別牌 또는 私仲이라고 부르는데 番上이나

微發의 번거러움에서 오는 弊害가 甚한바 있습니다. 사람은 궁주리고 말(馬)은 疲困하여 雨雪에 暴露되며 私門에 宿直하지 않을 수 없으니 衆心에 失는 怨恨이란 참으로 불상히 역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各道留京의 諸節制使를 모조리 廢止하고 京內나 地方의 軍馬를 三軍府에 直屬시켜 公家의 兵으로 하고 體統을 세우고 國柄을 무겁게 함으로서 人心을 바로잡고 兩殿宿衛를 除外하고는 私門의 直宿을 모조리 禁斷하고 朝路에는 私仲의 兵을 대리고 다니지 못하게 하며 古者家에 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여 後日에 猜을 거누고 亂을 이르킬 端緒를 막는다면 國家의 幸이 매우 클 것임니다.¹⁰⁾

이런 意圖 밑에서 斷行되었던 兵制改革 李朝國家를 貫流하는 軍事政策의 底流를 이루었다는 것은 가령 一八五〇年代의 李朝國家의 諸般實情을 調査한 結果로 發表되었던 다레(Charles Dalrymple)의 「朝鮮社會史」속에서 窺볼 수 있다.

「朝鮮의 文官制度로부터 武官의 그것을 보면은 軍隊의 數가 莫大히며 먼저 늘란다 公式統計에는 百二十萬以上の 兵士가 名簿에 실리어 있다. 이것은 貴族이 아닌 모든 壯健者는 兵卒이 되는 事實로부터 온 것이다. 이에 關하여 法律은 極少의 例外만을 認定한다.¹¹⁾

그런데 이와 같은 兵制改革은 封建家所團의 私兵을 中心으로 하는 高麗朝의 兵制의 集團的國軍의 再編成에 關하는 意味の 兵制改革의 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封建國家로서의 李朝國家의 權力機構를 兵制改革을 施行함으로써 그 末端에까지 浸透시킨다. 그러므로 國家體制로서의 集權的인 官僚機構가 專制主義를 強化하려는 國家體制再編成의 重要課題로서 斷行되었던 것이다. 李朝國家의 權力은 그 規模나 質로 보아서 뛰어나진 것이어도 不拘하고 그만큼 오랜 期間에 있어서 支配體制를 確立할 수 있

엇던것은 兵制改革을 端緒로하는 軍國家體制에 있어서의 軍事的에레멘트의 優位性때문이었다. 이제 端宗二年(一四五四年)에 完成한 李朝實錄地理誌에 記載된 兵士數와 純祖始에 編纂의 着手하여 同八年(一八〇八年)에 完成하였다고하는 萬機要覽에 記載된 兵士數와를 比較해 보기로하자. 卽 兵制改革이 斷行된 直後 地理誌에 記載된 軍士數

軍 種	兵 士 數	營 鎮 軍	一〇、八〇二
侍 衛 軍	一四、九三三	守 護 軍	二四八
翼 軍	一八、五二五	鎮 屬 防 牌	二五
守 城 軍	一、三一六		
船 軍	四九、三一七	計	九五、一六一

의 兵士數는 約 一〇萬이던것이 李朝末葉에 이르러 萬機要覽에 記載된 兵士數②

所屬機關	兵 士 數	地 戒 廳	五、四三二
訓 鍊 練 監	三七、一九四	均 役 廳	二四、五〇〇
禁 衛 營	九〇、七一九	船 軍	一五〇、六四二
御 營 廳	八八、四五九	計	三九六、八三六

더구나 壬辰倭亂의 慘禍를 겪은後 田政 軍政 還報의 國家體制的 三大基調가 紊亂해져감에 反比例하여 兵士數는 約四〇萬으로 增加하여가고있는것은 所謂 三政의 紊亂에서 國家體制的 再強化 專制的權力의 維持를 贊어오기爲한 唯一한 政策契機로서 兵士數의 增加 軍事的에레멘트의 偏重化政策이 하는수없이 強行되지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그리고 三政紊亂의 必然的인 歸結으로서 純祖十一年(一八一二年)의 洪景來亂의 發生을 비롯하여 民亂擴大로 李朝國家의 終末이 迫頭하자 애치런게도 兵士數는 더욱 增加

朝鮮教會史에 記載된 兵士數^㉔

京畿道	一〇六、五七三人	黃海道	一五三、八〇〇人
忠清道	一三九、二〇一人	咸鏡道	八七、一七〇人
全羅道	二〇六、一四〇人	平安道	一七四、五三八人
慶尙道	三一〇、四四〇人		
江原道	四四、〇〇〇人	計	二二二二、〇六二人

되어갔다. 앞에서 引川한 大邱의 教會史에 있어서도 一八五〇年代의 兵士數은 一二〇萬으로 헤아리고 있으니 國家體制가 弱화할수록 軍事的에 레멘트의 志向이 偏重되어가고 있다. 어찌던 그러면 그럴수록 李朝國家體制에 있어서 軍事的에 레멘트가 그럴마나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말하면 李朝國家의 軍事國家로서의 性格이 그럴마나 顯著한가를 實證하는 證據가 구더져잔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끝으로 李朝官人制度的 檢討에 있어 官人制度의 性格으로서 李朝國家의 性格이 規定된다는 前提에 따라서 官人制度의 性格은 文官的要素에 對한 武官的要素의 優位性을 實證하기爲한 不可缺的인 節次로서 文官에 對한 武官의 數量的 優位性을 確證해 보기로 하겠다. 다행이나 이點에 關한 檢討를 여기까지 留保해온것은 이미 兵士數의 累進的인 增加傾向이 스스로 文官數에 對한 武官數의 優位化傾向을 意味하는 것으로 表示할터고 했기때문이다. 그렇지않어도 가령 隆熙四年의 發刊된 中京續誌에 記載된바에 따라 서 文官數와 武官數를 直接的으로 對照해보면 結論은 더욱 確固해진다. 卽 禁盜軍人 哨官等의 治安當擔의 官人까지 包含한다는, 中京開城에 있어서의 文官數는 一四八人인데 比하여 軍官은 一八〇人이고 거기에서 守城軍官 二〇〇人 兵參軍官 二人 倉監官 一人 軍器監官 一人을 加算하면 三八四人으로 武官數가 壓倒的인 優位性을 보이고 있다. 어찌던 歐羅巴諸國의 近代的發展을 이루어나가는게

있어 빛나는 歷史的役割을 다했던 十字軍의 最大兵力이 一萬二千人에 지나지 않았으며 中世를 通해 最大의 軍 團 알리어졌던 에드워드三世의 軍隊가 三萬二千人에 지나지 않았는데 反하여 李朝國家가 四十萬이라던가 百二十萬의 軍隊를 거두래왔다는 것은 다른 論點은 除外하고 무엇보다도 李朝國家가 軍事國家의 性格을 變化하는 過程으로 始終一貫하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註一 H. Harrinton, The English Brass and Copper Industries to 1800. Pp. 7-8. 大塚久雄 『英吉利에 있어서 初期의 鑛山會社』 『近代資本主義의 系譜』 一七一—一七六面

二 Hermann Levy, Monopolies Cartels & Trusts in British Industry. Pp. 142-56

三 W. ne Sombelt, Der moderne Kapitalismus, 1. Ed. 1924. S. 316, 353, 355, 358, 360. 그리고 같은 著 者의 『競争과 資本主義』(立野保男譯) 一〇一頁과 本位田詳男譯 『마우찬 북리거』 二六頁을 參照하라.

四 J. R. Gearn, Short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1898. Pp 369-405.

五 M. Postan, The Fifteenth Century' The Economic History Review(May 1939). 前場 大塚代著書中 紹介論 文을 參照하라.

六 F. Quesnay, Despotism de la china. P. 613. 612

七 Montesque, De Lesmit des Lois Liv VIII. chap. XXI. P. 272

八 K. A. Wittfogel, Theorie der Orientalishan Gese'ishaft. 森谷克己譯編 東洋의 社會의 理論 第一編 第二章 二四—四二頁

九 恒麗盛服著 朝鮮開化史 二六三—二七頁에서 引用하였음.

十 和田一郎 朝鮮의 土地制度及 地稅制度 調査報告書 六十頁 以下

十一 E. A. Kracée, Civil Service in Early Sung china, 960-1067, 1953. P. 38. 56,

十二 安齋和齋 國朝八物志 上卷 八六頁

- 十三、同 上 八六一—八七頁
- 十四、同 上 一一四—一一五頁
- 十五、同 上 一二二—一二三頁
- 十六、同 上 中卷 一四二頁
- 十七、高麗史 卷七十八 食貨二 戶口條 同 上 卷七十八 食貨志 田制條
- 十八、朝鮮史學會編 朝鮮史講座 分類史中 麻生武胤稿 軍制史 二一四頁
- 十九、朴明著 李龍和 尹志諱譯 朝鮮教會史 五八頁
- 二十、萬機要覽軍政篇에 記載된 兵士數를 主體로 算出했으나 一部分은 麻生武胤稿 朝鮮財政史中の 「軍保의 配置」에서 補充 하였음。
- 二十一、朴明著 朝鮮教會史 六六—九八頁에서 算出했음。
- 二十二、中京誌 第一冊 朝鮮光文社版 官員 國防 兵制條에서 算出했음。

第二節 李朝產業政策의 性格規定

——鑛業開發政策消極化의 究明을 爲하여——

一 邊防政策의 檢討

앞에서 李朝國家의 一般性格을 歐羅巴 地區나 英國의 絶對王政과의 對比에 있어서 檢討하였다. 그 말다면 英國의 絶對王政과 同時的으로 出發하였고 大같이 軍事的에 예멘트를 骨核的要素로 하여 國家體制을 確立하였던 李朝國家는 英國의 絶對王政과 마찬가지로 보다더 큰 軍事力의 造出을 爲하여 軍需工業을 發達시켜야 한다. 또한 그이기爲해서는 軍需工業의 原料生産部門인 鑛業을 開發해야 한다는 方向

으로 産業政策을 施行하였던가 萬若 그렇지 못했다면 그 原因이 어찌 潛伏하고 있는가를 鑛業開發消
糊化 策의 究明에다 焦點을 두면서 檢討해보기로 하겠다.

문말할 것도 없이 英國의 絶對王政이나 李朝國家나 다같이 軍事國家로서의 一般性格을 지니었던만
큼 보다 더 많은 軍事力의 造出이 最高目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다만 軍事力을 造出하는 方式에
있어서 決定的인 差異를 露出하였다. 그러면 李朝國家에 의한 軍事力의 造出方式은 英國絶對王政의 그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點을 밝히기爲하여 먼저 高麗時代부터 「今西北之路 乃國家之要書 強兵之所
在也」라고 하여 가장 重要한 國防線이었던 西北面 卽 平安道 咸吉道一帶에 걸친 國境地帶의 防備
狀況 다시 말하면 李朝國家에 있어 가장 緊急한 軍事課題가 있었던 邊防政策을 檢討해보기로 하겠다.

趙浚의時務策에 明記되어 있는바와 같이 國家의 藩屏인 西北面에 對한 高麗朝의 防備策은 數 많은 防
戍軍을 駐屯하고 邊境 統治에關한 專制權을 軍參謀인 元師에게 賦與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李朝國
家에依한 邊防政策은 西北面을 비롯하여 全國海岸線一帶에 걸친 築城工事의 에게 두가지 展開로 나
타났다. 이계 築城工事의 展開狀況을 平安道 咸吉道の 等으로 두 區域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가) 平安道에 있어서의 築城 工事의 展開^①

(一) 定宗元年(一三九九年) 一月二十四日에 宜州 平壤에 築城케하였다.

(二) 太宗二年(一四〇二年) 六月二日에 西北諸州의 築城을 議하였다. 宜州、平壤、安州、義州 泥
城(品城) 江界等 五城을 築造할 것이 決議되었다.

(三) 太宗十三年(一四一三年) 八月十七日에 安州城을 廣築하고 樂山城을 併築케하였다.

(四) 世宗十年(一四二八年) 十二月六日에 鐵山郡 架山城을 新築하였다.

(五) 世宗十七年(一四三三年) 七月八日 江界 碧潼에 築城하였다.

(六) 同年六月九日 滿浦口에 木柵을 修葺케 하고 民居稠密處에 木柵을 메우고 또한 邊境要書

마다에 石堡를 쌓고 煙台를 세웠다.

(七) 世宗二十年(一四三八年) 八月二十四日 平安道沿邊의 石堡를 中朝瓮城制에 본받아 築造케

하였다.

(八) 世宗二十三年(一四四〇年) 三月一日 義州에서 慶源에 이르는 사이에 長城을 築造할것

이 決議되었다.

(九) 同年三月十五日 碧園의 行城이 完成되었음.

(十) 世宗二十四年(一四四二年) 一月十七日 茂昌에서 築州에 이르는三十六鎭사이에 行城을 築

造하다.

(十一) 同年三月十三日 閔延의 成坡에서 義州의 咸遠里에 이르는 九個所에 里堡를 築造케 하였다.

(十二) 二十八年 二月의 平安道行城을 築造하고 義州의 城을 増築하다.

(나) 咸吉道の築城狀況.

地方名	城名	城長	北靑都護府	邑	城	城長
咸興府	邑城	四六三至尺	端川郡	邑城	城	三九六〇尺
永興大都護府	聖歷山城	二九八二尺	甲山都護府	邑城	城	二二六一尺
	山倉洞城	五五〇八尺		外城	城	五三五尺
定平都護府	邑城	五九二八尺		惠山鎭	鎭	二二二〇尺
安邊都護府	鶴城山城	三九三〇尺				七二〇三尺

三水郡

邑城 一八二尺

暢錄江行城 一五一七尺

堡 七〇七二尺

鏡城都護府

邑城 五三八一尺

南山城 三一八九尺

堡 六一三二尺

柵 九七里

吉城縣

邑城 四五二六尺

堡 五二六〇尺

明川縣

邑城 三三〇〇尺

堡 一三七三尺

慶源郡護府

邑城 五〇八〇尺

慶源郡護府

訓戒鎮 三二四二尺

堡 八九八二尺

會寧郡護府

邑城 一七〇八八尺

行城 一一七二〇尺

高嶺鎮 二七八〇尺

堡 五二四五尺

鍾城都護府

邑城 四八八一尺

行城 一四八〇〇八尺

(豆滿江)

柵 三五八〇尺

行營 八三〇五尺

龍開鎮 二九八二尺

堡 四〇六五尺

穩城都護府

邑城 五五六〇尺

行城 一四三七六八尺

(豆滿江)

柔遠鎮 三六八七尺

美錢鎮 三六三九尺

堡 四〇八〇尺

邑城 五〇二六尺

堡 八一八六尺

邑城 三三三九尺

堡 六二〇九尺

以上の 平安道에 있어서의 築城工事의 展開과 咸吉道の 築城工事狀況에 關한 檢討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우가지 結論을 그집이 번수가있다. 첫째로 平安道에 있어서 築城工事が 發端한것은 定宗朝에 들어서서 부대인데 定宗 太宗朝에 걸쳐서는 散發的으로 試行되어오던 築城工事は 世宗朝에 들어서서 李朝國家가 高麗國家的인 것에서의 國家體制의 再編成이 進展됨에 따라서 차차로 積極的으로 強行되어가고 있는바 看取할 수있다. 둘째로 咸吉道の 築城工事狀況에 있어서는 德源都護府、制城縣、文川郡、洪原縣等の 邊境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國防上 그다지 重要치않는 地方에있어서는 築城工事が 이부이지지않았고 所謂 六鎭開拓의 中心舞臺인 邊境地域에 가까워질수록 重疊으로 가장 積極的한 築城工事が 強行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築城工事が 太宗이 敎를 내며 부르짖듯이 農業은 國家有立의基本이 되어야하나 爲政함에있어 마땅이 優先으로 다서리야한다는 所謂 李朝國家의 最高國策의하나인 農本主義보다도 한결음 앞서서 아니 實際로는 農本主義의 原則을 하면서 全國家機能을 築城工事的 強行에 퍼부었다가령 世宗二十三年(一四四一年) 九月에서 同三十二年(一四五〇年) 一月사이에는 六萬四千四百九十八의 民間人을 徵發하여 九個山城을 修築 또는 築造하였는데 이런 築城工事を 爲한 民間人의 動員이 그얼마나 廣汎하고 徹底하였는가는 다음의 引用文으로서 넉넉히 實感할수있다. 卽築城工事は 「太宗庚寅十年九月癸巳 司鍊院上疎 疎略曰 臣等近聞 邊海之民 愁嘆之聲 不覺長太息也 其男夫丁壯者 各持牛馬 輪石平壤 老弱婦女 收獲田畝 輪糶於道路」^⑥

「太宗庚寅十年九月壬申 議製平壤城 初資糧同自平壤府言 築城軍丁 取石于三四日程 牛馬疲困 至有婦女輪石 終繹于道 民間農器 盡爲推釘 其弊不可勝言」^⑦

爲해서는 農業勞動을 擔當하는 壯丁과 牛馬가 모조리 動員되었으며 食糧조차 支給되지않았다. 그리하여 老弱한 婦女의 손으로 農土가 耕作되었으나 드디어는 牛馬까지 疲困하여 쓰러지니 築城用을

은 取石하는 것은 男女丁壯이 擔當하고 農業 勞動의 最低線을 지켜오던 婦女子까지 築城工事に 動員하여 輪輪勞動에 從事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이러한 築城中心의 軍事力 派出方式이 그얼마나 脆弱한 것이었는가는 宣祖二十五年(一九二〇年) 四月에 勃發한 壬辰倭亂過程에 있어서 暴露되고 말았다. 가령 動亂前까지 左議政을 지내다가 動亂勃發과 더불어 兵曹判書를 兼務하여 軍務를 總治하고 스스로 都體察使로서 敵軍防禦에 盡力하였던 柳成龍이 諸般軍務狀況을 日記體로 記錄한 軍門騰錄속에는 築城中心이고 武器缺如의 軍事力이 正常的인 軍事力이 아니고 따라서 敵軍에 對한 防禦力을 造出하기爲해서는 軍需工業의 發達이 優先해야 한다는 歎息이 비릿하게 描寫되어 있다. 이제 軍門騰錄中에서 다음의 네가지 記錄을 引用하기로 하겠다.

(一) 「御使가 내려갈때에 防備大概를 仔細히 指摘해서 보냈거니와 江邊一帶에는 兵士數가 적고 糧餉이 不足하고 機械(軍器)가 不備하고 城池가 低淺해서 가장 가히 걱정이 되니 急時措置하여 機會를 일치말되 城을 지키는 데는 砲樓한가지가 가장 關重하므로 이미 軍器竄止 李璣를 發送할 것과 火砲를 아는 工匠을 帶卒하고 내려가게 했으니」^⑦

(二) 「道內(黃海道) 鉛鐵所産處는 모조리 採取할 일……… 海州邑城이 매우 좋으나 다만 砲樓가 없어서 萬全의 策이 될수 없는 때 들으니 城門을 新設한다하니 萬一 罪役은 아니하였다면 내리보내는 城圖에 依해서 할 일……」^⑧

(三) 「京畿道 練兵에 器械(軍器)가 不備하며 應用할 鐵物도 至急히 緊急하다. 殷栗縣監 金起南이 匠來에 器械를 措備하는 일에 盡心토록 奉行하며 들으니 그 採取한 鐵夫里(세부리)가 甚多하다니 隣近 鎭南浦의 船舶을 題給하여서 時急히 載運케 하되 앞으로 準備할 器械가 不知也」

數이고 鐵物은 漸漸 일기 어머우니 本縣에서 나오는 調査가 必要함 收刷하는 馬等은 格別히 完護하여서 하여금 繼續 採取하여서 後日의 緊急케 할일⁹⁾

(四) 「銃筒은 비록 鑄成하더라도 鉛丸이 末備하면 쓸수가 없으니 至今 京中에 所儲한 鐵丸이 그數가 너너지 못하니 마땅히 이때에 措備할것이고 平安道 中和地境 海邊과 瑞興府地境에 鉛鐵 이 多産이니 萬一 勤實한 사람을 보내여 採取하면 數月內에 所得이 적지아니 하겠다 하나 다만 이것은 먼저 役軍의 出處를 準備한 然後에 舉行해야 할 것이다¹⁰⁾

그러나 일찍히 明人들이 貴國文銃 鳴于天下 孰不知之 實爲倭銃之錫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명 「德宗元年(二〇三二)三月 尙使奉御 朴元綽請 命有司 作革車 續質弩 雷騰石砲 又請 以八牛弩二十四般兵器 置邊城之」¹¹⁾ 라는 記錄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近代의 大砲에도 비길만한 砲機 繼質弩 雷騰石砲 八牛弩 등의 武器製作이 盛行하였다. 그럼으로 歐羅巴 더구나 伊太利와 佛蘭西에 있어서 火砲의 鑄造가 普及된것이 十四世紀의 後半期부터이었다 하니 武器生産技術이 그렇거나 일찍부터 高度 했는가를 推想할수가 있다. 또한 李朝時代에 들어서 軍器 卽 砲銃의 生産技術이 더욱 高度化하였다 는것은 가령 高機要覽 軍政編에 記載된바를 보면 行川銃 別鳥銃 長鳥銃 銅絲大鳥銃 黑骨鳥銃 千步銃 馬上銃 銅砲 虎獅砲 循環砲 紅夷砲 佛狼機 子砲 銅小銃 三穴銃 등으로 銃砲의 種類가 機能 用途 資材別로 多樣化하였던 點으로 알수가 있다.¹²⁾ 더구나 壬辰倭亂過程에 使用되었던 火砲의 種類와 規模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四表 火砲의 種類와 規模¹³⁾

種類

全長

重量

勝字銃筒

五六〇ミリ

四斤八兩五

天字銃筒

五尺四寸四分五厘

七百斤

地字銃筒

五尺六寸七分

四百六十一斤

玄字銃筒

四尺一分

四百斤

黃字銃筒

三尺六寸四分

一百四斤

震天電

三尺六寸四分

一百二十斤

佛狼機

六八ミリ

二貫五百目

大將軍砲

一四七ミリ

二貫五百目

그러나 이러한 史實은 의외히 冶金術이나 軍器生産技術이 어떤 水準에 이르렀던가를 測定하는 契機는 필연지 모르나 李朝時代의 軍需工業發達狀況을 말하는 指標는 될수없다. 火砲란 그發達의 「嬰兒期」에 있어서는 東西洋을 莫論하고 陳地의 最前線에 配置하여 오로지 그 그로테스크한 形容과 요란한 火樂의 響音으로서 敵兵을 威嚇하는 任務을 다했을뿐이다. 그러므로 火砲의 局部的인 發達은 軍器生産의 全般狀況의 指標이라기보다도 冶金等을 中心으로한 手工業的技術의 奇型的 優秀性을 말하는 것이다. 마치 寺鐘鑄造術이 金屬工業一般의 指標가 될수없는 것과 같다고 볼수있다. 다음에 이點에關한 세가지 實證을 試行해보기도 하겠다.

(一) 洪景來亂의 境遇

周知된 바와같이 純祖十一年(一八一二年)二月의 黃海道 谷山府民의 暴動이 그해 十二月에는 平安道 全域에도 擴大된 一大民亂을 洪景來亂이라고한다. 그런데 다음해 二月二十五日에 洪景來의

陳所인 定州城에 對한 攻擊戰을 開始하였으나 作戰이 順調롭게 進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各方으로 義兵을 增募해오다가 三月八일에 回還의 冬至正使 曹允大 副使 李文會 등이 定州官軍을 訪問하여 말하기를 滹陽에 이르러 民亂發生을 알었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問答을 거듭하다가 끝으로 鳳城將의 傳言을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卽 「貴國에는 大碗口破城의 器(大砲를 말함)가 없는가 萬若에 碗口를 使用한다면 萬里長城이라도 破壞할 수 있는 데」¹⁵

그리고 定州城에 對한 攻擊戰에 動員된 兵士總數는 七千六百二十一名이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槍軍이 五百九十四名 砲手가 五百四十八名 밖에 안된 다니 總兵士數에 對한 武裝兵士數는 겨우 一三% 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武裝兵士中 槍軍이 六百名 가까이 되니 예미 時期的으로 보아서 一八二一年 卽 十九世紀 初葉이요 戰鬪의 性質도 보아서 年餘에 걸친 大規模한 民亂으로 그것의 時急한 鎮壓이 國家力量의 總動員 밑에서 이루어 졌다는 定州城에 對한 攻擊戰에 動員된 兵士의 武裝狀況이 이처럼 劣惡한 것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李朝國家에 依한 産業政策의 展開에 있어 軍需工業의 意義가 決定的으로 輕視하였다는 事實을 生々하게 表示하고 있다.

(二) 各地方軍器庫의 內容檢討

(가) 平壤續志 軍器庫 二十五冊¹⁶

- 鳥銃 一九一九柄
- 火藥 五四二〇斤
- 鉛丸 一、八八三九〇個
- 弓 一四九九三張
- 箭 一三一七部三二個

(나) 中京誌 官解條

「軍器監은 梨井里에 있는데 高麗朝에 石硫黃이 많이 들어있드니 이계는 土化硫黃이 많이 들어있다」
면서 平壤續志에 나타난바를 보면 平壤은 李朝國家의 邊防政策을 履行하는데 있어 가장 重要한 參謀基地인데도 不拘하고 이곳 軍器庫에는 一九一九柄의 烏銃밖에 들어있지않다. 다음에 中京(開城)은 前朝의首都 이었음은만 아니라 首都 漢城에 이르는 關門이라고하여 漢城다음가는 重要都市로 認定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그곳 軍器監倉庫에는 火藥의 主原料인 硫黃이 退藏되어 있을문이다.

(三) 李朝末葉의 記錄

「高宗十七年(一八八〇年)五月에 飭軍物資修造하다 先是하여 外道營相邑鎭所儲軍機藥丸이 殆有名無實하고 製造가 輿皆唐鈍하고 數目이 罔非冒錄이고 況且典守夫宜하여 或任其枋傷 而不念繕補하고 或知其偷失而無意查充이더니 至是에 領議政李最應이 啓請修造하다」^⑩

여기에는 이미 製作된 軍器마저 補修되지 못하고 있는 末期的 現象이 露呈되고있다. 그러면 李朝國家는 버젓이 軍事國家이면서 築城工事의 強行으로서만 軍事力의 造出을 所願하였고 참다운 軍事力 造出에의 要諦인 軍需工業의 振興을 政策的으로 強行하지 못하였는가 다음의 두가지 原因이 作用하였다. 첫째로 軍事政策의 收稅政策의 轉化이고 둘째는 鑛業開發消極化政策이다. 아래에서 이 두가지 原因을 個別的으로 檢討하기로 하겠다.

二 財政政策의 檢討

李朝財政政策의 非盤을 形成하는 田制改革이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念願하는바로서 보더라도 軍事費 造出을 둘러싼 軍事的 要請에 依하여 斷行되었다는것은 이미 보아온바이다. 그리고 이런 田制改革

의례두터안에서 施行되는 다시 말하면 土地에서의 現物地代를 物質的基盤으로 施行되는 軍事政策은 東洋諸國에 있어 유니크한 所謂 兵農合一政策이라는 것도 이미 周知된 바이다. 이러한 兵農合一政策은 軍事國家에로 裝備하지 않을 수 없었던 李朝國家로서는 國家體制의 強化는 農業生産力의 發展에 依存하는 바를 悟得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當然히 採譯하여야 할 歸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田制 兵制의 二人王業을 完遂하고자 하여 李朝國家가 採用한 具體的方法은 良心의 兵役年限에 있는 者를 交代服務케 함으로서 王城을 守備하고 非番者는 鄉에 있어서 現復者의 田番을 耕作하여 그 家族의 生計를 도우게 하고 現役者 一人마다에 非番者 二人을 配定하여 이것을 隣保 또는 良保라고 불렀다. 그後 中宗十年(一五一六年)에 大司憲 梁淵의 奏請에 따라서 非番者 每人마다에 布 二疋 賦課하여 國民義務의 均衡을 圖謀하며 그 收入은 軍費에 充用하였다.

그러다가 宣祖二十五年(一五九二年)에 壬辰倭亂이 勃發하자 李朝國家는 文宗元年(一四五一年)에 制定된 義興 龍驤 虎賁 忠佐 忠武의 五衛에다 八道의 兵權을 直結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이루어진 軍編成을 廢止하고 새로이 臨戰態勢를 強化한다는 目的으로 그해에 訓練都監을 創設하였고 뒷이어서 仁祖九年(一六三一年)에 御營廳을 肅宗八年(一六八二年)에 禁衛營을 仁祖二年(一六二四年)에 摠戒廳을 仁祖四年(一六二六年)에 守禦營을 創設하였다. 그리하여 從來의 五衛에 代置하여 五營이라는 軍編成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처럼 李朝國家에 依하여 軍制가 改編에 改編하는 制度로서의 離合集散이 거듭되어가는 동안에 李朝國家의 軍事機能의 鈍化 또한 軍事機能의 鈍化는 바로 軍器에 對하 關心을 鈍化시키고 軍需工業振興에의 政策的意欲을 鈍化시키고 말았다. 이點을 究明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다하는 努力의 焦點이다. 壬辰倭亂의 敎訓에 따라서 李朝國家가 採用한 「富國強兵政策」이 바로 앞에서 概觀

한 五衛에 代置하는 五營制의 新設이다. 그런데 이런 軍制改編은 兵士數의 增加 機構의 複雜化等으로 李朝財政에 무거운 負擔을 내러 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五營軍制의 編成過程을 다시금 回顧하여 보면 宣祖二十五年(一五九二年)에 訓練都監이 創設된 것을 비롯하여 二十三年後에 摠戒廳이 創設되었고 二年後에 守禦營이 創設되었고 六年後에 御營廳이 創設되었고 그보다도 五十二年後에 禁衛營이 創設되었다. 이처럼 五營軍制의 編成이 五十年以上 二十年以上の 長久한 時間的間隔을 두어서 이루어 졌다는 것은 壬辰倭亂에 뒤이어 李朝國家는 漸次로 深化擴大되어 가는 內憂外患을 苦惱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면 그럴수록 軍國의 增設을 繼起的으로 強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莫大한 財政的負擔에 허덕여 오던 李朝財政에다 새로운 軍事費를 附加的으로 要求하였다. 이러한 軍事費의 膨脹은 마땅히 內憂外患에 말미암은 李朝國家의 勢威失墜 그것의 克服策으로서의 軍國增設의 惡循環의 反覆은 李朝國家의 유니크한 財政機構等의 事實과 맞장구쳐서 李朝國家의 財政을 말할 수 없는 窮乏에 떠러트렸다. 그리하여 丁茶山이 「國家歲入常年不過十二萬石 若植凶年諭于京江者 每不過數萬石 國之經費將焉出矣」²¹라고 부르짖듯이 國家經費의 出處가 말러 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國家經費의 出處가 말러 버렸다는點에 李朝國家의 苦惱가 總集結하였던 것이요 바루 이 苦惱點을 克服하는 最後據點이 軍事政策이 어느새 本來의 使命을 忘却하고 財政政策의 補強策으로서 登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李朝國家의 軍事政策은 어떻게 財政政策에 對한 補強策으로서의 機能을 다하였는가 이點을 實證하기爲하여 다음 세가지 資料를 列擧하기로 하겠다.

(一) 摠戒廳의 檢討

앞에서 보아 온바와 같이 摠戒廳은 仁祖二年(一六二四年)에 壬辰倭亂後의 軍國增設의 試圖로서 創

設된 것인데 그 經費充當의 財源으로서 一、未墾地의 開拓 二、平倉北漢의 軍餉 三、兵曹移來의 木綿 四、經理穀 五、取耗米 六、月課米 七、補土所의 收益 八、別備錢等의 私經濟的 收益과 軍保制의 依據하였다. 여기서 軍保制란 各營마다 十六歲에서 六十歲의 이르는 徵集對象中에서 軍務에 奉仕하지 않는 兵役義務者를 割當하여 그들에게서 軍事費를 徵收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木廳」所屬 으로서 各郡에 配置된 軍保廳은 守樞軍官 三十七人 壯抄 十哨 屯壯抄 三哨 牙兵 十哨 屯牙兵 三哨(每哨는 百二十二名으로 되어있음) 各屯軍需保 九百五十一名 軍需保 一千二百十九名 吹 鐵 牙兵 八十名 그밖에 義僧審錢(各道) 僧侶에게서 徵收하는 兵役稅(을) 徵收하였다.²²⁾

(二) 三手米의 檢計

「宣祖二十五年에 設 訓練都監하여 三南海西關東五道에 始收 三手米(砲手 殺手 射手)하니 每結에 二斗 二升이라」²³⁾ 여기서 三手兵이란 砲手(砲軍兵) 射手(弓軍兵) 殺手(白戰兵)을 말하는 것으로서 五營軍制의 主軸的位置를 찾아하는 訓練都監을 構成하는 三大兵力이다. 말유아니라 三手米란 訓練都監을 構成하는 三大兵力의 養育을 爲한 軍事費造出의 方途로서 平安道 咸鏡道를 除外한 各道에 對하여 水田에 米를 旱田에 雜穀을 每一結에 二斗二升씩 賦課한 軍事稅이다.²⁴⁾

(三) 砲糧米의 檢計

그리고 時代가 李朝末葉에 接近하여감에 따라서 李朝國家가 蓬着한 內憂外患이 한고비 高調하게 되자 高宗八年(一八七一年)에 드디어 海防費에 充當한 特別軍事稅로서 砲糧米가 賦課되었다. 卽高宗三年(一八六六年)에 天主敎虐殺事件이 突發하여 天津에 駐留했던 佛蘭西軍艦이 江華島를 砲擊하자 舉國一致하여 海防에 딜끌어 江華島에 砲營을 設置했으나 그 經費의 充當策이 模然하

였기 때문에 三手米制은 모에두로하여 咸鏡道 平安道를 除外한 各道에 對하여 每結에 米一斗씩 賦課하였다.

이처럼 李朝國家가 苦惱하여마지않는 內憂外患이 累進的으로 增大되어감에 따라서 國家體制의 強化를 爲한 참다운 意味의 軍事力增強策이 構想實施되지 못하고 오히려 軍事課稅의 範圍가 擴大되고 徵收의 對象이 增加되어감에 따라서 軍事政策은 財政政策에 對한 補強策으로서 機能의 轉化를 이룩하게 있다. 이제 이런 軍事課稅가 李朝國家의 歲入增加에 있어 그얼마나 顯著한 役割을 다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英祖四十五年(一七六七年)의 地稅收入을 檢討하기로 하자 먼저 現物地代로서 米穀收入에 있어서는 總收入(石) 八二五、二八三中에서 田稅額이 一〇八、八四一이고 政府地方廳의 經費充當을 爲한 課稅인 大同이 五一五、七七九이고 나머지가 三手米 結作(軍保稅) 砲糧等의 軍事課稅로서 四九、四一八로서 그比重은 그다지 큰것이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참다운 指標로 보기 어렵다. 왜그런가하면 政府地方廳에 歸屬되는 大同稅가 實際로는 軍事費로서의 機能을 다했던만큼 大同稅까지 包含한 五七五、五三一이 참다운 軍事課稅의 比重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李朝末葉의 歲入狀況을 보면 孝宗二年(一六五一年)에는 米穀(豆包含) 十五萬七千四百三十七石 銀 三萬九千九十三兩 布木 十一萬四千一百匹이고 顯宗六年(一六六五年)에는 米穀(豆 包含) 十七萬六千三百八十六石 銀 五萬一千三百九十一石 布木 九萬一千六百五十五匹이고 肅宗朝의 平均年度인 肅宗三十三年(一七〇七年)에는 十九萬二千二百三十石 銀 一萬七千七百三十三兩 錢 六萬六千二百六十兩 布木 十萬九百匹이고 景宗三年(一七二三年)에는 米穀(豆 包含) 十七萬六千六百二十八石 銀 三萬一千一百五十六兩 錢 十一萬五千二十六兩 布木 九萬四百匹이고 英祖朝의 平均年度인 英祖二十五年(一七三七年)에는 米穀(豆 包含) 十五萬七千五百三十石 銀 一萬六千五百三十兩 錢 十六萬九千七百九十兩 布木 八

萬六千二百五十匹이고 正祖四年(一七八〇年)에는 米穀(豆 包含) 十五萬五千一百九十二石 銀 七百十六兩 錢 十五萬二千二百四十五兩 布木 七萬百五十八匹이다.

앞에서 列擧한 歲入年令表에서 우리는 다음 두가지 事實을 導出할 수가 있다. 첫째로 李朝國家가 達 著한 內憂外患이 甚大해가고 軍事政策이 財政政策에 對한 補強策으로서 機能轉化를 이루어감에 따라 서 總歲入量이 增加되어가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肅宗朝에 들어서 玆구나 記錄이 敎示하는 바로서는 肅宗二十六年(一六九九年) 卽 十八世紀에 들어서자마자 現物納稅에서 現金 納稅에로의 漸次的轉化가 開始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提起한바 問題點인 英祖四十五年(一七六九年)의 地稅收入의 檢 討에 되도록 보면 먼저 米穀地稅의 收入에 關해서는 이미 規定을 끝마친바이나 다음의 現金地稅收 入에 있어서는 總收入額 七〇六、三一八兩中에서 大同稅가 三三四、二七四兩이고 結作稅가 三三二、〇 四五兩이니 廣汎한 意味의 軍事稅가 그 全額을 차지하며 狹意의 軍事稅로서 結作稅만을 보더라도 五割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勿論 좀바이트가 指摘하듯이 近世初期의 玆구나 絕對王政期에 있어서의 歐羅巴諸國도 國家支出中 에서 軍事費가 찾아하는 比重은 全歲出의 七、八割에 올랐던 것이요 佛蘭西王은 一六〇一—一六〇 九에 年平均 六百萬리불의 軍事費를 支出하든 것이 一六八〇년에는 約一億(總歲出의 七四%) 一七 八四年에는 四億(總歲出의 六六%)였으며 英國王도 一六八八—一七八八年間에는 五億과 온드의 軍事費 를 支出하였다. 그리고 歐羅巴 近世國家의 存立條件이 課稅에 있었던만큼 이런 巨額의 軍事費도 租 稅收入에 依存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歐羅巴 諸國은 그런 租稅國家의 條件 밑에서도 무려 무려 軍事的이나 經濟的으로나 國家體制를 強化시킬 수가 있었는데 카닝그람(W. Cunningham)에 의 지는 時代에 關하여 絕對王政의 租稅政策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經費는 規

則바른 貨幣의供給이 없으면 調達될수없었다. 그리고 貨幣의 規則바른 供給은 다만課稅로서 必要的 額만큼 獲得되어 政府의 使用에 充當되었다. 新規의 要求에 應해서 課稅의 方法에 關한 모든 問題가 새로운 重要性을 지니게되었다. 그리고 貢納을 必集어낼 基金을 增加시킬려고하는 政治家의 欲求는 그날로 하여금 모든 階級の 臣民의 處地를 顧慮하지 않을수없게 하였다. 經驗은 이런 形態의 收入이 永久的으로 利用되기 爲해서는 國家가 繁榮狀態에 있어야한다는것을 가리키고있다.²⁰⁾

그리하여 歐羅巴諸國에 있어서의 租稅制度의 意義는 本源的蓄積의 基幹政策으로서 絶對王政의 國家體制 그리고 그存立條件인 軍需工業 乃至炭鐵等等 키이·인다스트리의 作林發展을爲한 直接的인 根據로서 빛나는 役割을 다했다. 참으로 歐羅巴諸國의 絶對王政에 있어서는 軍事的인 經濟的發展을 基幹條件으로하는 國家의 繁榮과 租稅政策과는 調和的인 相互關係를 갖일수가 있었다.

그러나 李朝國家의 租稅政策은 軍事政策을 補強策으로 銖求的으로 強行되었기때문에 軍事的인 經濟的條件에 있어서의 國家의 繁榮을 擴大再生産할수없었을 뿐만아니라 軍事政策 그自體도 財政政策에對한 補強策으로서 機能轉化를 이르키자마자 初期의 兵農合一政策의 테두리에서 離退하여 本來의 軍事政策에서 關心을 오로지 軍費의 補救捻出의 面에 옮기고말았다. 이처럼 軍事政策이 本來의 機能에서 離退하여 軍事政策으로서 自己墮落의 過程을 反覆하는 사이에 보다더 큰 軍事力造出의 要諦인 軍需工業振興에對한 政策的覺醒을 늦기지못하였던 것이다.

三 鑛業開發政策消極化의 檢討

우리는 드디어 韓國經濟의 後進性究明을 爲한 基本課題인 産業史研究에 있어 키이·포지션을 찾아하는 鑛業史에다 開拓의 廣이(鉞)를 내려박을려고 한다.

어찌던 韓國의鑛業은 일즉부터 世界에 널리알려졌다. 그런데 그처럼일즉 世界에 알려져 韓國鑛業에 關한 여러가지 見聞中에서 다음과같은 무가지 正反對의見解를 引用하지않을 수없는것은 感慨無量한事實이라고 아니할수없다.

一、二千年前에 中國文化와 接觸하게된 韓國人은 繁榮하여 그들은 드디어 南滿洲의 遼東半島全域에다 植民하리만큼 五百年間에 強力해졌다. 鑛山企業은 그들사이에 일즉부터展開되었다. 그것은 八世紀에 아라비아의旅行家 케라맛크·베이(Khondad·Bay)가 新羅(Silla)에 金이 豊富하다고 記述한點으로 알수가있다.⁽³¹⁾

二、그들은 쪼 十九日에도 온 終日 그 慘憺한 破紙物을 (熱心으로) 捡起내서 布木같은것은 말리고 鐵物等屬은 매우 좋아하야 (鐵붙은) 나무조각을 불에 태워 鐵만을 取하였다.⁽³²⁾

첫째의見解는 東洋諸國의鑛業에關한 數多한 文獻中에서도 古典的位置를 찾아하고있는 코린즈(Corinthian F. Collins)의 「中國에있어서의鑛業」이라는 著書中 韓國鑛業에關한 記述의 첫머리에 쓰여있는것으로서 貴金屬을 비롯한 諸般鑛業의 活潑한 發展을 憧憬한것이다. 둘째의見解는 一六五三年八月十五日에 濟州島附近에서 破船한 和蘭商船의 書記인 하멜(Hendrik Hamel)의 「蘭船濟州島難破記」에 나타난 漂着後사을제되는 八月十八日의記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가지 見解를 對照한적에 모음적이며 感慨無量한바를 느끼지않을수없는것은 첫째의見解에 있어서는 韓國은 富鑛의나라로 描寫되었는데 둘째의 見解에 있어서는 貧鑛의나라로 描寫되어있고 더구나 우리로서 이 正反對의 두가지 見解가 歷史的後景에있는 韓國鑛業에關한 眞實을 表示하고 있기때문이다.

李朝國家의 産業政策이 어찌하여 鑛業開發政策을 消極化하는 性格과 形態로서 展開되었는가 이點은 李朝産業政策一般의타이프를 把握하는 要諦가 되는것인데 그것을 밝기爲해서는 다음 여섯가지 文獻

的記錄을 列擧하고 거기에 對해서 個別的인 檢討를 俾우려야 하겠다.

一、宜祖二十六年(一五九三年)에 (明나라)兵部가 題請하여 內庫銀 三千兩을 本國(李朝)에 貢여시

內에 有功한이나。國事에 濟은 員役에 나누어 주게 하였다。

申欽이 말하기를 우리東方(朝鮮)의 鑛이 많은故로 麗末에 中國이 需하여 百姓이 命을擔當치 못

했으니 我朝(李朝)初年에 敷奏하여 上貢을 乞할려했고 上貢을 이미 允함으로 國貨로 쓰지 못하였

다。그러므로 列聖이 遵守하여 드디어 採銀의 길을 막고 命甲에 나타내었다。(33)

二、宜祖 三十五年(一六〇二年)에 戶曹가 採銀을 請하거늘 上(國王)이 말하기를 海에서(鹽)은 貴고

山에서 鑛하는것은 民이 裕하고 國이 足하고저합니다。다만 利源이 한번 竭리면 弊가 반드시 그

림차처럼 따라서 三秋桂子라는 等閑한 詩句에도 오히려 能히 金廣가吳山에 말(馬)은 세운 마음

을 이르겠거늘 하물며 我國은 處處에 銀鑛이 있다는말이 敵國에 遜여볼어가면 어찌 遜은 遜리

고 鞭을 던질 뜻이 없을까 卽今 中朝(中國)에서는 太監이 十三省을 分擔해서 크게 銀穴을 열

고 鑛錄에 利를 다하니 萬一 我國銀山의말이 中朝에 들이면 官을 設(보낸다)하고 開鑛하기를

前朝行省이 하듯이 할것이냐 그런때를 當해서 敢히 어떻게 處理할바를 알지못할것이다。大概 하

가지利을 이르는것보다 한가지 害를 없이하는것이 낫으며 한가지利을 내(生)는것이 한가지利을

멸(滅)하는것보다도 못하니 舉行하지말라(採銀 卽 開鑛하지말라)。(34)

三、正祖八年(一七八四年)二月二十五日 前平安道 觀察使 李性源을 召見하고 關西의弊相을 下詢하다。

性源 啓하여 말하기를 淸 西北各道處處 採金하여 甚하면 他人의山地를 掘하고 他人의田疇을 闕

우르고 食力의民 大半은 金穴에 歸하니 西農의比歲不登은 이때문이라고 하니 할수없읍니다。반드시

禁斷할 것임이나 다라고 하니 廟堂은 시켜서 申飭케 하다 또한 採銀 採銅도 諸道에一體로 禁載케 하다(35)
 四、英祖十六年(一七四〇年)에 廟堂이 또한 淮陽(江原道)에 銀礦을 設하기를 請하거늘 上(王)이 모
 다 不許하고 말하기를 이 物件(鑛產物)로서는 飢해도 먹지 못하고 寒해도 입지 못하고 後世人들이
 萬若 그도 囚해서 侈心이 생기며 어찌 근 弊가 되지 않으리요 또한 淮陽은 나라의 山脈이니 더
 욱 穿掘치 못하게 하라(36)

五、英祖十六年(一七四〇年)에 右議政 俞拓基가 王前에서 啓하기를 山譯의 制가 모다 公家(王室)도 들
 아가니 銀鉛을 採取하는 것이 어찌 可치 않은 까마는 다만 設店(採鑛施設의 設置)하는 弊가 可히 勝高
 치 못함바있으니 이것은 모다 深山巨谷中에 設置하고 金山을 掘鑿하여 자못 버리질(蜂巢) 같아서 단
 草도 남지 않고 모조리 赫山이 되어 버리니 近來에 江流가 마르거나 얕은(淺) 것은 半은 火田에 말
 미암고 半은 設店에 말미암은 탓이라 하물며 竊으면 十餘丈이나 或은 數十丈이나 됨으로 民人들
 이 採銀하러 들어가다가 恣히 多數人이 壓死하고 屍身도 掘出치 못하며 또한 四方에 遊衣遊食하는
 무리가 여기(鑛山)에 群集하여 殺越(殺人)과 싸움을 일삼는 弊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假設店(山)
 은 잡작이 罷하지 못할 지라도 此後로는 戶曹와 各軍門과 外方의 各營各邑은 勿論하고 萬一 朝廷에稟
 치아니 하고 任意로 銀鉛店을 新設하는 者는 格別히 重罪할 뜻으로 別로 定式을 삼아서 嚴飭하여 分
 付하는 것이 어뎡읍니까 (王)이 (意見)에 따르다(37)

六、光武八年(一九〇四年)에 參政 申箕善이 奏하매 鑛山開採하는 것은 生財하는 良策이 아닌바는 아니나
 各國의 規模가 다만 深山과 曠漠한 땅에 開鑛하기를 許하고 田野는 처음부터 開掘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農業을 妨害하고 民瘼(弊)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我國의 東峽(江原)과 西北諸路에는 開鑛의

處로서 마땅한곳이 있으나 三南에 이르러서는 人烟(家)가 稠密하고 田疇(地)가 野에 차서 漏(한)인 探鑛을 開始하면 田畾이 모두 破損을 입을 것이고 墳墓와 家屋도 모다 온전치 못할 것이니 現今 開鑛하고 있는 諸郡에 있어서는 完全한 명을 다시 찾을 수 없으며 稅入은 얼마 되지 못하고 田結이 減縮된 바를 賠償할 道理가 없으며 鑛夫의 弊端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散하면 盜賊이 되고 集하면 亂을 이르켜서 稷山の變에 이르러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이 極한 것입니다。 府郡의 報告와 人民의 告訴가 날로 遞示하여 呼訴하여 애달은 바를 告하니 國計(國家歲入)에는 도움이 없고 百姓을 害롭게 하며 亂을 일으키는 등 일의 그릇됨이 이보다甚함이 없으니 이미 外國人에 許한 것만은 천천히 交涉하여 辦理하도록 하고 그밖에 三南各郡은 農商工部나 內藏院所轄은 勿論하고 무릇 開鑛한 곳을 一體로 封閉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가 國王은 이체에 따르다。(38)

우리는 李朝産業政策의 一大特徵을 이루고 있는 鑛業開發政策消極化의 諸原因을 分析하는 素材로서 以上 여섯가지 文獻的記錄을 列擧하였다。 참으로 이 여섯가지 文獻的記錄속에 李朝國家의 鑛業政策의 方向과 그것에對한 態度가 난김없이 陳述되었으며 또한 産業政策一般에對한 李朝國家의 方向과 態度도 두런이 露呈되었다。 李朝國家의 所願은 窮局에 있어서 鑛業開發을 許諾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對한 지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李朝國家가 에리자베스朝의 인 것과 正反對의 産業政策 밀 鑛業政策에 對한 方向과 態度를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點에 問題究明의 키이, 포인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제 앞에서 列擧한 文獻的記錄을 分析要約하면 다음 다섯가지 點에로 歸結될 것이다。

첫째로 李朝國家는 高麗朝의 前例를 踏襲하여 明의 冊封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對하여 每年費 正의 뜻으로 定例使節(正朝使) 나 종에는 冬至使로 改稱(을) 보냈는데 그使에 多種目的의 土産品을 進獻하였다。 그런 進獻物의 主要한 것으로서 金銀 馬匹 人參 豹皮 苧布 麻布 滿花席 滿花方席 螺鈿梳

函等이었다。그런데 高麗末葉에 들어서부터 더구나 李朝로 바꾸어저서부터는 이런 進獻物을 徵索하기
 기에 저지않은 困難을 느끼게되었던 것인데 무엇보다도 金銀等の 鑛產物에있어서는 한진 徵索難도
 그러하거나와 다른 한편에있어서는 마치 歐羅巴絶對王政에있어서 貴金屬에對한 徵求度가 갑자기 높
 어졌던것처럼 李朝國家도 貴金屬에對한 漸增的인 徵求을 느끼지않을수있었던것이니 이것이 對明進獻
 義務의履行怠慢으로 나타났다。이러저리하여 明에對한 金銀進獻은 참을수없이 過重한 負擔이었으며
 그 고달픔에서 에스케이프한다는것이 李朝國家의 對明外交政策에있어 基本課題가 되지않을수없었다。
 가령 文獻에 明記되어있는바로서는 太宗七年(一四〇七年)三月七日條에「初朝廷 進銀器 歲貢 七百餘
 兩」라고했으며 또한 그보다 十年後의記錄에는「每歲 貢鐵 黃金 一百五十兩 白銀 七百兩」으로 되
 어있는點으로 미루어보아서 明에對한 金銀進獻量이 每年에 金 一百五十兩 銀 七百兩인것 같다。이
 程度의進獻量은 그다지 過重한것은 아난못하나 進獻量如何보다도 貴金屬에對한 李朝國家의徵求가 高
 調되어가는 무림인지라 어찌던 金銀歲貢그自體를 廢止하거나 또는 다른 生産物과의代置가 目的이었
 다。그리하여 太宗 世宗代에 들어서서 從來의 歲貢用 金銀徵索에關한 金銀의私的輸出禁止 金銀의使
 用制限 民間金銀의收集等の 消極的한 對策을 물리치고 歲貢免除를 爲한 根氣있는 外交運動을 展開
 하였다。太宗九年(一四〇九年)一月二十一日에서 聖節使知議政府事 奧眉壽를 明에 派遣하여 金銀은 本
 國所産이 아니다。이때까지 進獻해온것은 前元時代의 商人이 往來販賣한것인데 이제는 儲藏해둔것도
 거의 消盡되었으니 다른 土産으로서 代貢할것을 奏請케하였다。또한 世宗二年(一四二〇年)一月二十五
 日에는 禮曹制參 河演 允錄寺少卿 韓確을 派遣하여 皇帝에 厚紙 石燈臺을 進獻하고 皇帝의側近官
 黃儼에게는 麻布 細細 鉛鐵帶 招裘等を 贈呈하여 金銀歲貢의免除를 奏請했으나 그런못한 成果를얻
 을지못하였다。그러나 世宗十一年(一四二五年)에는 王의親弟인 誠齋君을 遣明하여 亦是「金銀非本國所

産이라고 具陳情하여 드디어 初志를 이루고 돌아왔다.

그러나 明에對한 金銀歲貢의 免除는 外交上의 一大成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을 契機로 하여 李朝國家는 鑛業開發의 門戶를 闢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卽 (一)에서 보아 온바와 같이 壬辰亂發生直後인 宣朝二十六年(一五九二年)에는 軍事援助로서 銀 三千兩을 받고 보니 버젓이 本國의 地下에 豐富한 金銀礦을 遇藏되어 있는 데 그것을 開發하지 못하며 이제 外國援助로서 金銀을 얻어 쓸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政策的 誤算이라는 意見이 擡頭하자 이런 意見에對한 政府當局의 答辯은 이미 歲貢을 免하였고 列聖이 遵守하여 採銀의 길을 막았고 그것을 傳統化하고 있는 만큼 그 傳統을 改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朴趾源의 熱河日記에도 「내 이제껏 그 金이 어디로 가며 그 과녁이 많을수록 그 값이 더욱 오름이 무슨 까닭인지 몰랐더니 이제 이 기와에 칠한 것이 우리나라 金이 아닌지 어찌 알수 있더리오 淸나라 初年의 歲幣에 제일 먼저 金을 넣었음은 土産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제 萬一 奸商이 法을 어기고 가만히 이를 팔아서 혹시 이것이 淸나라 朝廷에 알려지게 된다면 비단 사단이 생길 念慮가 있을문만 아니라 淸나라 임금의 이미 黃金으로 지봉을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金礦을 열지 않음은 어찌 기필할 수 있으리오」⁴⁰⁾라고 쓸쓸하게 告白되어 있다. 熱河日記의 著者가 外交使臣으로 中京에 갈려고 祿綠江을 넘은 것이 正祖四年(一七八〇年) 六月二十四日이었고 英國에 있어서 왓트(James Watt)의 蒸汽機關이 改良에 改良을 거듭하여 大工業用의 蒸汽機關으로서 最後的으로 完成한 것이 一七八四年이니 英國의 産業革命이 最後完成에로 肉迫해가고 있는 바투 그때에 明淸하고 緻密한 頭腦를 갖았기에 이튿날 朴趾源은 明나라의 監視와 鑛業權의 侵略을 두터워하면서 閉關政策이 불쌍됨없이 施行되지 못하고 있는 바를 깊이 憂慮하고 있다. 참으로 十八世紀後半期의 英國과 李朝國家사이 에 가로놓여 있

면 奇異한 對照相이라고 하니 할 수 없다.

물째로 가령 太宗의 農은 有國의 本으로 삼아야 하며 爲政의 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下敎에 明示되어 있듯이 農業만이 生産力의 基本인 것이요 鑛山業같은 것은 末制 또는 盛衰興亡이 끈임없이 反覆되는 經營條件 밑에서 이루어지는 投機事業에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投機事業의 그때그때의 一時的 魅力에 끌려서 農民이 鑛山地帶에 雲集한다면 農業生産力不足의 結果 生産力의 基本이 허무러진다. 가령 臣下들이 江原道鑛産의 採取를 許可해달라는 要請에 對하여 英祖가 鑛産物은 궁주됨을 當해서도 먹은 수가 없고 추이를 常해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요 뜻없이 사람들의 後心만을 刺戟하는 것이니 許可할 수 없다고 答辯가운데 鑛産物은 참다운 富 (Wealth)가 아니고 反面에 衣食住의 根源인 農産物만 참다운 富이라는 思想이 鮮明히 反映되어 있다.

또한 正祖八年(一七八四年)二月二十五日에 國王은 前平安觀察使 李性源을 召見하여 關西의 地方狀況을 聽取하다가 金鑛業의 普及으로 말미암아 山地가 개트러지고 田畝이 허무러져서 農業生産力이 減退하고 그때문에 農民의 地稅納付狀態가 惡化해가고 있다는 報告에 부닥지자마자 비단 關西地方뿐만 아니라 各道의 各種鑛業은 모조리 閉鎖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光武八年(一九〇四年)에 參政 申箕善의 開鑛政策에 關한 上奏가운데서 世界各國의 鑛業政策이 農業生産을 妨害하지 않도록 卽 深山이나 曠野에는 開鑛해도 좋다는 方向으로 實施되고 있으니 我國에 있어서도 非農業地帶인 西北地方에는 開鑛을 許可하고 農業地帶인 三南地方에는 王室이나 政府의 直營鑛山이라도 모조리 閉鎖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 못어찌까지나 農本主義의 原則에 立脚해서 消極的인 開鑛政策을 主張한 것이므로 理解할 수가 있다.

세째로 어떤 鑛業이던 鑛脈이 豊富한 사이에는 別問題가 없나하더라도 한번 鑛脈이 絶斷하거나 貧瘦化하면 인차 倒閉되고 만다. 그런데 이처럼 鑛山이 倒閉되면 그곳에 모이었던 數 많은 鑛夫들은 一

朝에 生計를 잃어버리고 마니 各方面에 흠어져서는 盜賊으로 一變하고 또한 모이면 모이는대로 亂을 일으켜 肅입없는 地方騷動의原因이 되는것이기때문에 閉鎖政策을 許諾할수가 없다는것이다. 바둑판앞에서 引用한 申箕善의 上奏가운데에도 鑛夫때문에 생기는 弊端은 이두말할수 없다고하면 다음과같이 實證하고있다. 卽 鑛夫들은 貧瘦化하여 호트지시 盜賊질하고 모이면 무력의힘을 빌려 地方騷動을 일으킨다. 가령 稷山亂같은것은 너무나 어이가없어 形諺하기가 어렵다. 날로 클러오는 府郡의報告와 百姓들의告訴는 모조리 鑛夫들의弊害를 呼訴하고 애달은바를 말하는것뿐이다. 한편 閉鎖을 許諾해뵈뵈자 國家收入에 도움이 되는바도 없지않고 百姓이 疲瘡을 입고 反亂이 일어나는機會만되는것이니 이미 外國人에 許可한 鑛山은 차차로 處理해가더라도 그밖에 鑛山은 모조리 閉鎖시켜야 한다는것이다.

내재로 앞에서 列擧한 여섯가지 文獻的記錄의基底를 훑고있는 一貫한 政策的指標로서 鑛業에 관한 失業發生에對한 危懼이다. 더구나 李朝國家에 있어서 失業發生의意義는 오로지 失業發生으로서 끝이 는것이 아니라 大量失業의發生은 그양그대로 地方騷動의 有力한 原因으로 作用한다. 그러기때문에 鑛業에는 大量失業이 隨伴한다. 그리고 大量失業은 肅입없는 地方騷動을 일으켜서 드디이는 李朝國家의 絶對主義的인 國家體制를 弱시킨다.

달음아니라 가령 世宗二十九年(一四四七年)四月二十日에는 「平安道監司에 諭하여 孟山縣民이 逃亡州弊라하니 救急의術을 百度케하다」 宣祖十三年(一五八〇年)七月十六日에는 「平安、江原兩道에 水災가甚함으로 恤典을 舉行케하다」 顯宗九年(一六六七年)에는 「平安道の飢民 三萬八千三百餘人前後 賑費가一萬一千三百餘石이되다」 正祖十四年(一七九〇年)二月二日에는 「西北流民의 願還數가 願留數에 차라지못함으로 다시 曉諭하여 本土에 還하기를 願하는者는 賑應에 불이고 給糧交付 還歸後에는 別加願恤 받는

바 新舊選 및 當年の身役을 一並蕩滅케 하다(41) 등의 農民救濟 〓 慈惠政策을 內容으로 賑恤事業 (이것을 前期的社會政策이라고 불려도 좋을것이나)은 무엇보다도 紛擾滋事防止를 물려쌓고 旋回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紛擾滋事防止를 爲한 農民救濟 〓 慈惠政策은 自然發生的인 民生苦難 對象으로 施行되었으나 萬若 반드시 大量失業의發生을 隨伴하는 鑛業의開發을 許容한다는것은 人爲的으로 農民救濟 〓 慈惠政策施行的 對象 卽 大量失業의發生을 招來하는것이니 그야말로 한가지 利害 남기보다도 한가지 害를 없이하는것이 보다더 낫은일이라는 東洋的인 「價值判斷」이 成立되어 鑛業開發政策의 消極化가 決定되어졌다. 그리고 비단 鑛業開發뿐만아니라 李朝國家의 産業政策一般이 英國을 비롯한 歐羅巴諸國의 그것에比하여 가장 消極的이고 가장 退嬰的이었다는事實의 基底에는 따라서 또한 李朝國家의 社會經濟的發展이 停滯하고만 데에는 앞에서 指摘해온 네가지 理由가 가로놓여있는 것이다.

註 一、高麗史 卷之三十五 中郎將房時務傳。

二、高麗史 節要 卷之三十三 辛譜十四年八月。

三、아래 築城工事に關한年代表는 李朝實錄의 記錄에 依據한것이 나 다만 引用은 平安北道編 平安北道史에서 하였음。

四、新州東國輿地勝覽에서 收錄하였음。

五、太宗實錄 卷第二十 庚寅十年九月 癸巳條。

六、太宗實錄 卷第二十 庚寅十年九月 壬申條。

七、朝鮮史編修會編 朝鮮史料叢刊 第三 軍門履錄 十四面에서 原文을 照錄引用하였음。

八、同上 五十面에서。

九、同上 六十一面에서。

十、同上 五十八面에서。

- 十一、太白山本日記 己未八月條。
- 十二、高麗史 卷百二十七 列傳四十 廉兆條。
- 十三、萬機要覽 軍政篇二 軍器條。
- 十四、有馬成市著 朝鮮役水軍史 二十三「朝鮮의 火砲」에서 作成하였음。
- 十五、平安北道史 第四大事志 純祖十二年條에서 引用하였음。
- 十六、同上 純祖十二年條 參照。
- 十七、平壤政志。
- 十八、中京誌 卷之四 官嶽條。
- 十九、李定求編 四千年文 通考 軍容糧餉條。
- 二十、朝鮮總督府編 李朝時代の財政(橋本)一九七—八面에서 引用하였음。
- 二十一、丁若鏞 經世道表 第一卷 地方戶曹文條。
- 二十二、麻生武藏著 朝鮮財政史 第二節戶稅 一三九面에서 引用하였음。
- 二十三、同上 一三九面에서 引用하였음。
- 二十四、前掲 四千通文獻通考 田賦考 一四六面에서 引用하였음。
- 二十五、大典旨遺 卷之二 收稅條。
- 二十六、前掲 李朝時代の財政(橋本) 第四章 租稅制度 第二節 地稅條 參照。
- 二十七、增補文獻備考 財用考 國用二 戶曹一年經費出入數에서 計算하였음。
- 二十八、前掲 吾바르르著 近代資本主義 第一卷 第二章 近代資本主義의 歷史的基礎 第四九節 租稅의 入數 參照。
- 二十九、W. Cunningham; The growth of English Industry and Commerce in Modern Times. The Macmillan System. Pp. 4—5.

第十、William F. Collins; Miner's Enterprise in China. Teutun 1923. 西村雄三譯 支那의 鑛床及 鑛業 第十

二章 朝鮮의 鑛業을 參照하였음.

三十一、하일源流記 李丙譯 二三頁에서 引用하였음

三十二、增補文獻備考 卷一百六十 財用考附 金銀銅 宣朝二十六年條를 翻譯 引用하였음.

二十三、同上 宣朝三十五年條를 翻譯 引用하였음.

三十四、前掲 平安北道史 第三大事志 景宗八年二月二十五日條에서 引用하였음.

三十五、增補文獻備考·英祖十六年條를 翻譯 引用하였음.

三十六、同上의 같은條를 翻譯 引用하였음.

三十七、同上 光武八年條를 翻譯 引用하였음.

三十八、申寅稿稿「朝鮮中宗時代之鑛銀問題」(稻葉博士還曆記念 鮮滿史論叢所收) 二節 鮮初의 金銀歲入과 그 免貢에

서 引用하였음.

三十九、朴祉源著 熱河日記太學留館錄 八月十五日條를 引用하였음 (翻譯은 金聖七譯에 依하였다).

四十、이 비가지 引用文는 모우 李朝實錄의 記錄이나 다만 引用은 前掲 平安北道史에서 하였음.

三節 李朝鑛業의 經營形態的 分析

一 官營鑛業의 性格究明

— 端川銀礦을 中心으로 —

咸鏡道의 端川은 高麗時代以來 金産地로서 널리 알려져서 李朝에 들어서도 자주 探訪使를 派遣하여 探掘케 하였다. 가령 太祖實錄에는 「太祖七年에 田希吉을 시켜서 金을 端川 永興에서 採取케 하였다.

田希吉이 端川에 가서 軍人 八十名으로서 金을 採取케한지 九日만에 四鏡을 얻어 이것을 獻하였다. ①
그러나 아직 銀產地로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달음아니라 金產地에서 銀產地에로 轉換하여 鑛業地로서의
名聲을 멀리 海外에까지 떨치기爲해서는 銀鑛法이 發見되어야 하였다. 이點에關한 實際는 다음에 引
用하는 李朝實錄의 記錄이 詳細히가라키고 있다.

燕山君九年五月十八日條에

良人 金甘佛 掌隸院奴 金儉同 以鉛鐵鍊銀以進日 鉛一斤鍊得銀二錢 鉛是我國所產 銀可足用 其鍊造

之法 於水鐵鑪鍋內 用猛炭作圈 片截鉛鐵填其中 因以破陶器 四圍覆之 熾炭上下而鑠之 傳曰 其試之。 ②

그다지 어버운 原文이 詳음으로 그냥 引用했는데 이처럼 일찍이 燕山君九年(一五〇三年)에 銀鑛

鍊法이 傳來하여 그것이 李朝鑛業의 採鑛鍊銀過程에 適用된것은 다음 두가지點에 있어 劃期的인 事

實이라고 하니 할수없다. 워너(Max Weber)는 그의 「宗教社會學論文集」(第一卷 二七九面)에서 東洋

諸國에 있어서의 銀鑛業에關하여 다음과같이 指摘하였다. ③ 卽 西紀十五世紀에 이르기까지의 中國

에 있어서 銀貨幣가 거의 完全히 缺如하였던事實을 採金일採銅과는 달리 採銀은 許多한 困難에 부

닥쳤기때문이라는點에서 究明하려고하여 「그自體로서는 萬若 適應할 技術만있었다면 採鑛할 價値가

있었을것이다」고 指摘하면서 東洋諸國의 數千年來 商品流通에 있어서 銅 그리고 金이 媒介的인 劑을 다

해왔을뿐이고 貴金屬의 三體(卽 銅 金 銀)中에서도 가장 優位的인 地位를 차지하여야 할 銀이 商品

流通界에 雄姿를 나타내지 못했다는것 따라서 十五世紀까지의 銀鑛業이 活潑한 進展을 보이지 못한 原

因을 銀의 採鑛鍊銀에 固有하는 技術的困難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十六世紀에 들어오자마자 일찍이 端

川에 있어서 銀鍊法이 適用되어 貴金屬의 三體中에서 가장 優位的인 地位를 차지하는 銀鑛業이 展

開되게되었다는것은 첫째로 貴金屬生産의 飛躍的인 發展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 넷츠(J. D. Nel)教授

도 近世初期の銀鑛業을 經濟史的으로 究明하는 論文에서 獨逸을 비롯하여 中央歐羅巴諸國의 銀鑛業이 十六世紀前半에 未曾有의 繁榮을 이루게된 가장 主導的인 原因으로서 一四五〇년에 銀을 含有한 鑛石에서 鉛을 使用하여 銀을 分離하는 新發明이 생겼는데 舍申(Sachsen)公이 이 新發明의 使用을 許可한것이 三十年戰爭이 開始된해인 一六一八年이었는데 이 銀製鍊法의 使用을 起動力으로하여 때마침 衰頹過程에 빠졌던 中央歐羅巴의 銀鑛業은 갑작이 活氣를 마우게되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李朝國家에 있어서도 從來의 低度한 採鑛製鍊技術이 高度한 技術水準으로 既進하였다는것을 意味한다. 어찌던 端川이 金産地의 段階에서 銀産地의 段階으로 轉化하자 널리 海外에까지 그名聲을 떨치게된때에도 그런 만한 必然性이 있었던것이다.

한편 金甘佛等의 報告를 들은 燕山君은 인차 卽 五月二十三日에 端川銀의 私採를 禁止하고 그해 十一月十四日에는 租稅常擔官인 戶曹判書 李誥과 鑛業常擔官 工曹判書 鄭眉壽等을 現地에 派遣하여 端川과 永興의 鉛으로서 銀을 吹鍊케하고 그成績如何를 報告케하였다. 그 報告에依하면 鉛二斤에對하여 端川鉛은 十分銀(純銀)四錢 永興鉛은 十分銀二錢을 採取할수있다는 것이다. 卽 端川鉛은 永興鉛보다도 二倍나되는 含銀率을 表示했던것이다. 이처럼 端川鉛은 含銀量이 많았을뿐만아니라 李朝實錄의 中宗十五年(一五二〇年)九月十七日條에는 金世準의 上疏로서 「端川一邑 周回五六息之地 鑿地皆鉛 實無窮之用也」라고 記錄되어있는點으로 미루어보아서 無盡藏에 가까운 鉛의 埋藏量을 갖고있는듯하다.

그러면 燕山君九年(一五〇四年)五月二十三日부터 官營形態 밑에서 經營되었던 端川鑛의 實態는 어떠한 것인가 이點을 究明하기爲하여 먼저 韓國鑛業史關係文獻中에서도 異彩를 미우고있는 端川邑誌의 記錄을 읽어보기로하였다.

「……本府에 貢銀하는일이 인제 비롯했는지 알지못하나 古老가 傳하기를 閏初(李朝初부터 採納

하였다고 한다. 歲貢이 처음에는 定數가 없고(一定치 않고) 採鑛하는 바에 따라 多少할 뿐이더니 壬辰倭亂 平定後에는 天朝(明나라朝廷)에서 詔敕이 牽牛(數多)해진 데다가 實應이 蕩竭하였기에 萬曆壬辰에는 따로히 採銀御史 閔有慶을 보내서 南北十餘邑에서 民人을 調達하여 千兩을 鑄해서 封進하였다. 그後로는 千兩을 定式하였다. 그러나 隣邑의 役軍을 調達하는 데에 弊가 甚지 않음으로 本府에 所納할바 貢物을 모조리 免除하고 銀役採取에만 專力케 하였다.^⑥

이 할막 汗引川甸에서 우리는 녀녀히 官營鑛業은 祖稅政策과 賦役政策을 二大支柱로 하는 經營形態 밑에서 인우어적다는 것을 看取할 수가 있다. 먼저 賦役政策부터 檢討하기로 하자. 李朝國家는 國家體制存 立物質的基盤을 쌓어나가기爲하여 農業生産力의 增大와 軍事力의 造出을 爲하여 籍田 邑屯川의 耕作 勞働 水利 灌溉 勞働 築城 및 其他土木 勞働等의 附加 勞働을 民人에 賦課하였다. 다만 할 것도 없이 이런 賦役 勞働의 特質은 無償 勞働이라는 點에 있는 만큼 賦役者의 立場으로 보면 賦役 勞働의 生産物 分配에는 參與할 수 없으니 生業을 爲한 勞働과 賦役의 勞働의 두가지 勞働을 支出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朝國家는 主要鑛山을 官營해 나가는 데 있어 舊來鑛業에 있어 主導的이고 또 決定的인 生産要因인 勞働을 大量 調達하기爲하여 賦役 勞働 制를 適用하였다. 端川邑誌에도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大量 勞働을 調達하는가 이것이 最大의 鑛山運營의 眼目이었다.

그리고 鑛山業에 있어서의 賦役 勞働은 本來的인 賦役 勞働이 아니고 附加的인 것이었던 만큼 鑛山地域의 民人에게 여러가지 賦役이 重疊的으로 賦課하였다. 이런 賦役의 重疊的인 賦課方式의 弊害을 없이 고저하여 亦是 端川邑誌의 引用句에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른 賦役 義務는 모조리 免除하고 採鑛 賦役만을 賦課하여 農耕 賦役을 비롯한 本來的인 賦役에對하여 重要視하는 措置를 施行하기도 하였다. 가령 太宗實錄에 나타난 記錄으로서 太宗十二年(一四二二年)十二月十二日條에「東北面 採訪別監 朴

允忠 於守邊、端川地面 得金三兩以進 以軍六百 役三日也」로 써여져 있는데 이記錄은 아직 端川銀의 採鑛이 展開되기前인에도不拘하고 三日間에 六百名의 役軍이 動員되었다하니 銀鑛業이 活潑히 展開되었을적에는 그럴마나 大規模한 賦役勞働이 動員되었는가를 손쉽게 推想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賦役勞働에依한 官營形態는 다음과같은 矛盾에 逢着하지않을수 없으니 그것은 官營鑛業의 또 하나의 支柱인 租稅政策에서 派末한것이다. 卽 端川邑誌에 記錄되어있는바와같이 壬辰倭亂 平定後 對明貢銀의 責應量을 充當하기爲한 採銀御史 閔有慶의 超非常措置로서 近隣十餘邑에 결친 大規模한 賦役動員으로서 一千兩을 採銀했다고하여 그것이 軍貢銀責任量으로 固定되었다. 그런데 端川 銀鑛만으로서 一千兩의歲貢을 지탱해나간다는것은 참을수없는 過重한 負擔이 아닐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다음 記錄은 이런 實感적으로 엿필하고 있다.

顯宗五年(一六六五年)에 端川의貢銀을 減하다 咸鏡道監司 閔鼎重이 狀啓하되 端川産銀은 대개 祖宗朝로부터 採納하는 規定이 있어서 한결같이 鑄造하는바 多少에따라서 달렸고 元來 一定한數가 없드니 壬辰倭變後에 天朝使命을 接待할적에 國用이 固渴하고 銀貨가 絶貴함으로 따로이 御史를 遣하여 一年을 督採하니 鑄한바 千兩에 차는지라 千兩으로서 定式을 삼고 本郡의各項貢物은 모조리 免除하고 다만 貢銀만 命했다니 本郡이 이미 다른 役事를 除한故로 採銀軍도 또한 民戶를 썩어 그로서 各邑에서 發軍하는弊를 없도록했드니 採銀하는것이 매우 쉬워져서 貢納以外에도 私利가 생계서 銀匠이 날로 모여들어 사람이 모다 즐거워하드니 近年以來 銀脈이 갑자기 鑄해 서 나시는 可히 採한건이 없음으로 不得已 鉛脈하나를 採하이 鉛을 鑄後에 法을 써서 다시 鑄하여 銀이 되나 百斤의鉛에서 十兩의銀을 거두기가 어려워서 每年에 鑄하는바가 千兩에 차지못한데 그不足한數를 이미 民에賦課할수도없고 또한 해를 물릴수도없으니 이에 비로소 富實한

品官九名을 抄出하여 監官으로 差定하고 하여금 監探 監鑄케 하여 一人의 監官이 四十日로 限을 삼고 四十日(間)의 所納(量)을 百十兩零으로 限을 삼아서 萬若 監役日限內에 그數가 찾아 못하면 私私로 備納케 하니 한번 監官을 지내면 家業을 모른다 破하고 匠人은 一年內로 勤勞하고 날마다 監責하나 마춤 銖釐의得(한푼의所得)을 얻어서 衣食의資로 補할수 없으니 모두 逃散하였다. 人路諸邑이 貢物로 或은 土産을 轉賣하여 上納하나 값이 千金가는 것이 없거늘 端川만이 千兩을 바치며 他部에나 經用을 元來 依賴하는바 없거늘 本部에 있어서만 民人의家産이 破하니 輕重이 스스로 달음니다. 採銀하는것이 쉽고 많을적에는 많이받어도 民人의虛政이 아니되지만 採銀이 어렵고 적을적에는 積게 받더라도 法을 굽되는바가 아니니 맛당하도록 해아리시 數를 減해서 民意를 풀어주는것이 事理에맞는듯합니다. 이에 (國王은) 命하여 四百兩을 減하드니 肅廟二十八年

(一六八六年)에 다시 一百兩을 減했다. ⑦

이 咸鏡道監司의上奏에는 東洋諸國에 結친 封建的貢租關係의特質을 이루고있는 두가지 事實이 實證되어있다. 첫째로 貢租率이 地方에 따라서 顯著한 差異를 나타내고 따라서 統一的인 稅率이 缺如되었다. 그러기때문에 前記上奏에도 다른地方에다 國家經費를 依賴하고있지않는에 端川만이 家産을 허우터가면서 千兩의歲貢을 어긋하지않는나고 부르짖고있다. 둘째로 貢租率이 한번 最高生産能率을 基準으로 制定되면 生産狀況의盛衰를 考慮할줄을 모른다. 또한 그러기때문에 前記上奏에도 採銀하는것이 쉽고 많을적에는 많이 받어도 民人의虛政이 아니되지만 採銀이 어렵고 적을적에는 積게 받더라도 法을 굽되는바가 아니니 맛당하도록 해아려 貢租量을 減해서 民意를 풀어주는것이 事理에 맞는다. 國王의가슴을 울지겨서 每年에 千兩이던 端川의貢租額을 六百兩으로 또다시 五百兩으로 減少

하였다는 것은 이미 보아온바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새로이 한가지 問題를 提起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問題이다. 그것은 前記上奏에도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端川礦의 生産量이 漸減的傾向으로 기울어지자 相對的으로 賦斂의 무게가 漸増해져가는 過程에서 貢租徵收가 惡化되었다. 그리하여 이런 貢租徵收狀況의 惡化를 克服하고자 어코 每年 千兩의 貢租를 完納케하기爲한 새로운 措置로서 每年에 鑄하는바가 千兩에 達이 못함에 이에 비로소 富實한 品官 九名을 抄出하여 監官으로 差定하고 하여금 監探 監鑄케하여 一人의 監官이 四十日로 限을 삼고 四十日의 所納(量)을 百十兩으로 限을 삼아서 萬若 監役日限內에 그數가 達이 못하면 私私로 備納케하였다. 여기에 새로이 貢租政策의 強化策으로서 官營形態의 骨肢的構構인 監官制度(나중에는 別將으로 改稱되었으나)가 登場하여 이 監官制度의 效果如何로서 官營經營形態의 政策的歸結如何가 오로지 規定되는 새로운 條件이 造成되었다. 勿論 監官制度의 創設初期에는 前記上奏에는 明白히 指摘된바와 같이 한번 監官을 지내면 家業을 破하고 經營責任者인 監官 밑에서 生産技術을 擔當遂行하는 匠人도 一年內로 勤勞하고 날마다 監責하나 마침내 生計를 維持하기爲한 汗汗의 所得도 얻지 못하니 監官이거나 匠人이거나 逃散하고 말았다는 뜻이 極惡條件 밑에서 허덕이었던 것만 감출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每年千兩의 貢租가 四割이나 減免되었다가 다시 五割이 減免된後에는 모든 事情은 一變하여 監官制度 그自體가 官營經營의 毒素的作用을 다했다 먼저 이點에 關한 詳細한 記錄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引用하기로 하겠다.

肅宗十三年(一六八七年)에 戶曹에 命하여 銀店(銀礦)은 旬管하는데 別로 幹事人(經營專門家)을 擇하여 監官이 採取한 銀은 戶曹에 納付케하고 鉛鐵은 그歲收된數를 則計하여 各衙門에 分送케하다

左議政 南九萬의 劄(特別上書)에 말하기를 戶曹가 採銀할 일로 別將(管官)二人을 撰出하여 慶尙
 平安兩道의 分送했더니 무릇 이미 設置된 鉛店은 裁革(施設改良)하지 않았거나 戶曹에는 鉛鑛으
 로 推하고서 銀과 鉛의 制를 並收하는 모든 鉛店의 監官을 罷하고서 새로 差出한 別官으로 하여금
 統領케 하여 그 銀鉛은 모조리 戶曹에 納付하여 銀은 本曹(戶曹)에 留置하고 鉛은 各衙門에 分
 送케 하였다. 또한 別將의 地望(地位와 物望)이 或은 輕하거나 事權(事業權利)가 重치 않음이 念慮
 시 印信(官印)을 鑄給하기를 請하고 또한 那縣의 通關을 許諾하니 그 權任의 要緊과 그 特持의 優
 授하기가 例를 따라 便行의 非할 바가 아니며 一路(道)를 專制하고 各衙門에서 權限과 重利를 獨取
 시 縱橫(來來) 그 作爲를 任意로 하니 이것이 어찌 다만 前日에 各衙門에서 監官을 私送한 弊
 문이 것인가 이제부터 銀店이 반드시 날로 더 設置되고 사람이 날로 더 모여들어 民人의 丘墓와 實家가
 반드시 날로 파지고 山의 材木과 林藪가 날로 精化할 터이니 이제 이처럼 採銀하는 것이 將次에 나
 라에 利하며는 것입니까. 이제 別將이라는 것은 未知한데 將次로 利를 取하는 濕藪로 삼으니까
 將次로 一路(道)의 福星으로 삼으니까. 設令 이것으로서 萬億의 銀을 얻는다 하더라도 可다 하지 못
 하거늘 戶曹의 所得이 반드시 所望하지 바에 찾아 못합니다. 端川(은만)하더라도 그 貢物價를 모조리
 免除해서 採銀하는 募民의 生資를 삼어도 歲貢의 오히려 除貢物價만으로도 못하거늘 이제 諸道에
 걸쳐 널리 銀店을 設置하면 반드시 다 邑貢을 免除하기를 端川처럼 하지 못할 터이니 그렇다면
 저 募民이 處處에 千百으로 那을 이룬 것이 모다 그 父母妻子의 衣食하는 것을 반드시 採取하는
 銀鉛으로서 다하고 그것으로서 生資를 삼을 것이니 別將된 자 카이나 斗로 먹는 以外에 私利를
 는 것은 반드시 採取하는 바 銀鉛으로서 다할 것이요 그 남여지가 戶曹에 들어오니 그것이 果然인
 마나 되겠습니까. 方今 國家의 大患으로 되어 있는 것은 民人이 飢餓해도 먹은 것이 없는 데 있고 銀

貨가 缺乏한데 있는것이 아니건대 이런 弊開이 어찌 中外의人心으로하여금 먼저 그所望을 잃게 하지 않을것인가요^⑧

이처럼 官營經營의 椎機를 찾아하는 別將制度的運營方式에對한 깊은 省察과 날카로운 批判이 퍼부어지자 李朝國家는 別將非行에 對하여 嚴罰主義를 所行하였다. 가령 實錄의 肅宗二十九年(一七〇三年)七月 六日條에는 「平安道觀察使 李世載가 馳誓하기를 銀店別將 李旭의 非違를 劾하여 境上에 提示된것은 請하다 命하여 本道에 仍囚케하고 罪償後에 死를 減하여 絶島에 定配케하였다」^⑨ 등의 記錄은 가장 顯著한 이그점들이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어찌던 이처럼 死刑이라던가 定配라던가 最高刑으로서 官營鑛業에對한 管理機構를 強化하는 政策의 態度로 나온것만 감출수없는 事實이었는데 그러면 嚴罰主義로서 威脅해가면 施行된 官營方式의 性格은 果然 참다운 意味의 官營的經營形態이었는데 아닌가 이點을 李朝의 歷史期間中에서도 英國의 에티스베스 絶對王政과 大同期的인 時代的位置를 찾아하는 中宗時代(一五〇六年—一五四五年)의 鑛業 政策 더구나 端川銀鑛에對한 管理方式을 對象으로 檢討를 배풀어 보기로하겠다.

이미 보아온바와같이 端川이 金産地에서 銀産地에로 轉化한것이 燕山君九年(一五〇三年)이었다. 그리고 大同同時에 端川銀鑛은 官營形態 밑에서 運營되었다. 그런데 端川銀鑛이 이런 官營形態 밑에서 運營되게된 經過를 다시금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卽 肅宗九年五月二十三日에 承旨善參의 摺에 依하여 端川鉛의 私採을 禁한것이 官營開始의 實質的인 契機이었다. 그러므로 李朝國家가 처음부터 官을 派遣하여 鑛床을 測量한다던가 試掘을 한다던가 또는 採鑛 選鑛 鍊鑛 鍊鍊施設을 設置함으로써 비로소 官營鑛業이 開始되는 것이아니다. 오히려 官營鑛業開始의 唯一한 契機는 民人들이 가장 무티미티브한 勞

勞手段과 勞動方式을 媒介으로서 小規模的으로 家計補充的經營을 이루어오던것을 「私採를 禁한다」(官 派遣한다) 등의 上諭를 發布함으로써 政府가 從來에 民人들이 이루어오던 小規模家計補充的經營을 그와그대로 公許하는대신에 그들에게서 鑛稅를 徵收하는 方式으로 바꾸어지는것에 지내지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李朝國家에 依한 開鑛政策의 始發過程이기도하다.

그런데, 이처럼 燕山君九年 卽 一六世紀에 들자마자 開鑛禁壓政策이 開鑛公認政策으로 바꾸어진데에는 다음과같은 必然性이 감추어져있다. 卽 燕山君四年(一四九八年)에는 戊午士禍가 일어났고 燕山君十年(一五〇四年)에는 甲子士禍가 일어났고 또한 中宗元年(一五〇六年)에는 中宗反正이 일어나는 등 李朝國家가 逢着한 內憂外患이 한참 高調되는 그 무렵에 李朝國家의 開鑛禁壓政策이 開鑛公認政策에 轉化하였다. 이미 보아온바와같이 李朝國家의 財政政策 租稅政策은 李朝國家가 逢着한 內憂外患이 高調됨에 따라서 보다더 많은 軍事費의 造出을 爲하여 徵稅額과 徵稅場所를 同時的으로 增加하는 方向으로 進展되었다. 그러므로 開鑛禁壓政策의 轉化에서 官營鑛業의 經營形態가 形成되었다면 이런 官營形態의 村微이 租稅政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租稅政策이 國家歲入의 增加를 原則으로 一般的意味의 租稅政策이 아니라 가장 重要하게는 軍事費의 造出을 爲한 租稅政策다시 말하면 軍事財源으로서의 鑛業稅의 徵收機構로서 官營鑛業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런 分析的歸結은 生生한 文獻的記錄을 援用함으로써 그正當性을 補強하는것이 우리에게 보다더 緊急한 課題로 提起된다. 먼저 端川銀鑛이 從來의 私採 卽 私營的經營方式에서 官營的經營方式으로 轉化하더라도 小規模家計補充的經營狀態에는 아무런 改良도 俾우되지않고 租稅만 徵收되었다는 點을 實證하는 資料로서 다음과같은 李朝實錄의 記錄을 引用할수가있다. 卽 燕山君十年(一五〇四年)七月十三日條에는 「下咸鏡道 稅銀 一升十二兩于 尙衣院 時端川郡產鉛 許人吹鍊造銀 每一人 二日 稅銀

① 二兩^二로 되어 每人當 一日 銀一兩의 租稅를 納付케 하였고 萬若 一日 銀一兩의 租稅를 納付치 않고 採鑛하는 所謂 潛採者에게는 楮貨僞造罪와 同格의 重罰에 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賦課된 鑛業稅는 처음에는 尙衣院의 需要 卽 王室의 裝身具用에 充當되었던 것이나 中宗元年(一五〇六年)의 中宗 反政과 같은 大規模 反亂이 發生한後 이 內憂外患의 增大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軍事費의 造出이 緊急해지자 軍事財源充當等으로서의 開鑛政策의 必要가 高調되었다。 가령 中宗反正後 燕山君의 弊政을 改革하는 臨時措置로서 端川銀鑛도 一時閉鑛케 했는데 中宗三年(一五〇八年)一月六日에 左議政 朴元宗은 端川의 銀鑛을 禁封해도 郡民이 모를지히 潛採하는바가 끝이지 않으니 차라리 剛明한 官人을 派遣하여 採取吹鍊케 하여 그것을 商人에 販賣하여 그 價布로 道內軍士의 月俸을 給하고 그 殘餘分은 各衙門에 分給하여 軍資의 不足을 補充할것을 建議한데 對하여 政府 府院君 六曹判書以上の 重臣들이 그 建議를 다시금 國王에게 啓請하였으나 國王은 明나라의 銀歲貢이 再強要될것을 念慮하여 重臣들의 勸諭같은 啓請은 물리치고 말았다。 또한 中宗六年(一五二一年)八月二十七日에도 文城府院君 柳詢等이 成鏡道軍資의 不足狀況을 報告하는차에 그 補充策으로서 納報採銀을 建議하였다。 여기서 納報採銀이란 軍糧을 納付하는者에 限하여 端川銀의 採掘權을 賦與하는 것이었으나 國王은 마찬가지 理由로 第二次建議도 물리치고 말았다。 軍事費의 造出은 爲해서는 開鑛이 最高의 政策이나 明나라의 銀歲貢을 바치라는 恐怖에 사로잡혀서 그 最高의 政策을 斷行할수 없는 鑛業政策을 틀어잡고 또는 李朝國家의 디펜다는 여기에 그 크라이막스한 姿態를 露呈하고 있다。

이런 디펜다가 뜻없이 되푸터 되어오던 차에 中宗十年(一五二五年)二月에 들어서 會城城은 據點으로 하고 從來 李朝國家의 一大脅威를 주어오던 野人尊長 莽哈과 사이에 外交上 一大危機가 突發하였다。 卽 北邊野人의 最大勢力을 누리고 있는 莽哈에 對하여 中宗은 일즉부터 여러가지로 懷柔策을 써

오면서 李朝國家에對한 潛在的反抗性을 撫掠하다가 마침내 葬恰父子가 漢城을 訪問한물을 利用하여 그를父子를 拿獲問罪하여 드디어 珍島에 流配하였다. 이 事件이 發生한後 李朝國家는 北邊野人의 反擊에 對備하기 爲하여 東北面에 堅固한 邊防政策을 急速히 強化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꾸어 보면 明에 부단히 國王의 가슴을 괴롭히오던 鑛業政策上 디엔다는 一掃되어 그의 政策決定의 저울은 明나라의 銀錢貢을 바치라는 恐怖보다도 軍事費의 緊急造出을 爲해서는 不得已 開鑛政策을 所行하지 않을수 없다는 方向에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가령 實錄에 中宗十一年(一五一六年)五月二十九日條에는 「正書 朴桂日 端川採銀 爲補軍資也」라고 써어진 記錄은 端川銀鑛을 官營形態로 開鑛한 窮極의 目標가 軍事費의 緊急造出에 있다는것을 힘차게 支持하는 것이다.

이러한 進展過程을 더듬어온 李朝國家의 鑛業의 官營形態에 對比하여 에티카베스의 絕對國政에 依해서 어떠한 官營形態 밑에서 英國鑛業의 近代的發展이 이루어졌는가 周知된 바와같이 에티카베스國朝는 全領土에 걸쳐서 王室鑛山權(Royal Mining Rights Mines Royal)을 갖이고 있었다. 이 王室鑛山權이 李朝國家에 있어서는 軍事財源으로서의 鑛業稅의 徵收權으로 나타날것이나 에티카베스王朝도 꼭 마찬가지로 軍事財源의 培養의 標的을 두고서 이 廣汎한 權限이 發揮되었다. 卽 미리지벳王朝는 二大特權鑛業會社를 創設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移讓해주었다. 그 하나는 一五六四年에 創設된 미인지·로이야니(Company of Mines Royal)會社이고 다른 하나는 一五六五年에 創設한 베네다누·엔드·밋더리·워이크스(Company of Mineral and Battery Works)會社이다. 그러나 勿論無條件의 讓渡는 아니었다. 가령 마인즈·로이야니會社의 境遇를 보건대 에티카베스王朝는 軍事費의 造出을 爲해서 이 會社生産物의 十分의 一을 貢租로 徵收했으며 남이지 生産物에 있어서도 軍需工業의 必要原料를 調達한 數量에 限해서는 市場價格以下의 一定價格으로 購入할수 있는 先買權을 留保하였다. 이會社는 처음에

는二十名の株主로서 構成된 合名會社였으나 一五六八年五月에는 에리자벳스女王的 特許狀(Charter)가 賦與되면서부터 企業形態로서 近代的인 株式會社組織으로 改編되었으나 한편 王冠의保護속에 靑이 잡기우게되었다. 이것이 李朝國家의 그것과 對照되는 에리자벳스王朝에依하여 세이프된 鑛業의官營形態이나 다만 우리가 여기서 날카롭게 반히고저하는 點은 이런 特權鑛業會社的인 官營形態 밑에서 英國의 鑛業이 스프루스한 近代的發展을 이룰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點이다.

이 마인즈·로이야루會社는 처음에는 約四千名の從業員을 雇傭한 各種産業의 密集地帶로서 그들四千名の從業員은 典型的인 메뉴팩처를 構成하였는데 그들이 製鍊業者로서 運搬業者로서 製材業者 金屬工業者로서 個別的인 經營的인發展을 이루어 그結果를 集大成하면 産業革命遂行의 基礎前提가 築造될수있었다. 한편 마인즈·로이야루會社의 經營狀態는 設立以來로 그다지 順調부지 못했다. 처음에는 營業不振의原因이 英國內市場의狹隘에있다고하여 海外販路의獲得을 企圖해보기도했고 營資金의不足때문이라고하여 에리자벳스女王이 스스로 巨大한 銅鑛을 購入도했고 低利融資도 하였다. 그後에도 저지않는 波란曲折이 繼起的으로 거듭되었으나 어쩌면 에리자벳스 絶對王政의 幸福統治 밑에서 英國鑛業은 近代的發展을 이루어나갈수가 있었으며 더구나 이런 鑛山業의 近代的發展을 惟로하여 産業資本의 全般的인 形成發展이 可能 하여졌다. 그러므로 李朝國家에依한 鑛業의官營形態가 鑛業의近代的發展을 抑壓하는方向으로 展開되었다는것은 鑛業生産의類廢를 歸結하였기때문에 보나도 近代的産業資本의 形成發展이 그것을 基盤으로하여 이루어지는 바루 그 鑛業生産이 類廢하였기때문에 李朝國家에依하여 近代的産業의形成發展코오스가 開拓되지못하였다는點에 悲哀의集中的表現을 찾아볼수있다.

二 生産形態의 分析

— 生産技術의 究明을 中心으로 —

여기서 提起된 問題는 李朝鑛業의 生産機構에 關한 分析이다。그리고 그것이 生産機構의 分析일지
 데 生産技術의 管理機構와 生産技術의 遂行機構와의 相互關係의 究明이 分析의 焦點이 되어야 할 것이나 前
 項에서 生産技術의 管理機構의 典型的 模型으로서 官營的 經營形態의 檢討를 罷물었음으로, 여기서는 生産
 技術을 基本的인 生産工程에 卽應하여 個別的으로 考察하고 남이지 生産技術의 遂行機構는 李朝鑛業
 勞働의 特質이라는 타이틀 밑에서 따로 檢討하기로 하겠다。

鑛業生産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生産工程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採鑛 選鑛 製鍊의 세 가지이다。그러므
 로 採鑛工程에 關한 生産技術부터 檢討를 俾두러 나아가는 것이 自然스러운 順序일 것이다。이점에 關해서
 먼저 端川邑誌의 記錄을 살피기로 하자。

「數百年以來의 銀脈이 斷絶하였다。舊時에는 銀穴이 三處에 있었으니 하나는 蔬德山에 있었고 하
 나는 檢義德山에 있었고 하나는 加先洞에 있었다。蔬德은 掘地하여 泉(바닥)까지 이르니 銀脈이 드
 더어 斷絶하였고 加先은 岩을 돌고 깊이 들어가서 採取하니 匠人들은 呼吸이 通지 않아서 조금
 만 있으면 氣塞(氣가 막혀서)하여 昏絶하여 採取하기가 어렵다。다만 檢義德의 銀穴만은 十餘里를
 돌고 들어가면 空洞에 들어갈 수 있음으로 兩處人이 모여 여기서 採取한다。처음 들어갈 때에는 炬火
 를 빛이지만 깊은 곳에 이르러서는 氣塞하여 불이 꺼지니 匠人들은 (손으로) 만저(壓)보던가 (코
 로) 마터(嗅)보던가 (헤론) 씨버(嚼)보던가 하여 金(鑛石)과 흙을 가래서 採取해내니 功은 많으나
 銀은 적게 얻는다。」¹²⁾

이 記錄에 스켓치되어 있는 李朝時代의 採鑛技術을 同時代의 歐羅巴諸國의 그것과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低位性을 指摘할 수가 있다. 첫째로 이미 高麗朝末葉의 恭愍王時代부터 火藥의 使用이 普遍化하였으나 아직 採鑛工程의 前提工事인 開鑿作業 더구나 鑿坑開掘作業이 있어서 火藥의 爆破力을 利用하는 作業方式이 實踐되지 않았다. 둘째로 가령 쑤바드트는 歐羅巴諸國의 鑛業生産에 있어서 일찍이 十六世紀에 들어서부터 「生産의 大形態」가 나타난 것은 鑛業生産에 固有한 排水問題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多數人의 協業이 必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⑮ 그런데 端川銀鑛에 있어서는 十餘里나 되는 堅抗을 開掘했음에도 불구하고 排水裝置가 缺如하였다. 어떤 觀點으로 보면 歐羅巴의 鑛業에 對한 李朝鑛業의 特徵의 하나가 歐羅巴의 鑛業은 炭鐵鑛으로서 構成된데 反하여 李朝鑛業은 金銀銅等の 貴金屬鑛으로서 構成되었다는點에 있다. 그런데 이런 貴金屬鑛은 露天採取法에 始終해왔고 깊이 地下를 掘고 들어가서 採取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排水技術의 發達이 缺如되었다고 한는지 모르나 이 排水技術은 採鑛技術의 基幹的項目인만큼 그것의 發達이 缺如되었다는 것은 李朝採鑛技術의 低位性에 關한 決定的인 測度일 뿐만 아니라 李朝鑛業의 技術特徵을 地下鑛業이 아니라 地上鑛業이다 固定시키고 鑛業全體의 發展을 抑制한 技術的原因이 되었다. 李朝末葉의 採鑛技術의 어떤外國人의 概觀은「이點에 關한 諒察에 도움이 된다.」殷山 雲山等外國人이 嫁行하는 鑛山을 除하고 普通 韓國에서 行하는 採掘法은 姑息한 法으로 鑛床의 露頭에 對한 階段法으로 단지 鑿(鑿)과 망치(鎚)에 依해 長徑 約三尺 短徑 約二・三尺의 長方形의 坑口로 掘追하고 甚히 깊은데 이르르면 出水함으로써 大抵 二・三十尺을 普通으로 한다. 그러나 이어서 다시 走向에 掘追하기도 한다.……支柱는 坑口의 岩石이 崩塌하기 쉬운 部分 또는 必要에 따라 이를 施設했다. 坑夫가 坑口를 上下함에는 支柱 또는 坑壁에 附設된 板판으로 더욱 危險한 때는 바늘을 내면서 그에 依支한다.⑯ 이처럼 先進國의 産業資本이 鑛業部面을 向해서 侵入해 들어온 그 불업에도

적어도 中國이나 日本에 있어서처럼 手工業的인 排水技術마저 適用하지 못한채로 結局 排水難 때문에 坑이 땅속으로 鑛脈을 追擊해 들어가지 못하고 땅바닥우에서 아물거리고 있었다.

세례로 李朝鑛業의 採鑛技術에 있어서는 坑內作業의 勞動能率如何를 左右하는 決定的인 모멘트인 換氣裝置와 坑內用燃火의 缺如이다. 더구나 端川邑誌에도 坑內에 있어서 炬火의 使用이 言及이 되어 있으나 換氣裝置가 缺如되었기 때문에 坑內를 깊이 들어가서는 炬火도 꺼진다고 했으니 가장 重要한 事實은 換氣裝置의 缺如라고 斷定할 수가 있다. 리히트호펜(F. Von Richthofen)은 그의 유명한 極東觀察記인 「中國日記」(Baron Richthofen's Tett Letters)에 있어서 極東諸國 더구나 中國鑛業의 生産技術의 低位性을 實證하는 한가지 資料로서 中國炭坑에 適用되고 있는 原始的인 換氣裝置를 다음과 같이 憐憫하고 있다 「通風竹管은 炭斤깊이 넣으면 瓦斯는 그管에서 脫出하여 外部의 空氣속에 消散하니 坑內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瓦斯를 두려워할 必要가 없었다」

다음은 採鑛工程에 관한 生産技術을 考察할 차례인데 이에 관한 記錄은 端川邑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採鑛工程은 製鍊工程의 不可缺한 技術的前提인만큼 이 工程에 관한 勞動支出이 省略될 수는 없다. 다만 鑛業史關係의 文獻에 있어서 採鑛技術의 重要性이 輕視된 것만은 감출수 없는 事實인데 그것은 李朝鑛業의 生産技術의 編成에 있어서 採鑛 製鍊 製鍊의 基本的인 生産工程 사이에 劃然한 技術的分業이 形成되지 못하므로 選鑛工程은 製鍊工程에 包含되며 大凡하게 採鑛製鍊의 두 生産工程 사이에만 技術的分業이 形成되었기 때문이라고 推想된다. 어쩌면 李朝鑛業에 있어서는 鑛業生産의 基本的인 生産工程에 卽應하여 劃然한 技術的分業이 形成되지 못하고 歐羅巴諸國의 鑛業生産에 있어서는 施設이나 勞動方式으로 獨立的인 生産工程을 이루고 있는 選鑛工程이 製鍊工程에 從屬되었다는 것은 李朝鑛業의 低度한 生産技術을 測定케 하는 重要한 契機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 選鑛工程에 關한 生産技術은 어떻게 發揮되었는가 이點에 關한 推理를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빛나는 힌트를 주는 것은 林岡經濟志에 써어진 다음과 같은 記錄이다.

案건대 우리 東國을 또한 處處에 銀을 (生) 産하고 있다. 開鑛設場 或은 開(閉)고 或은 閉(閉)고 하나 다만 開北의 端川 關西의 江界等處는 至今까지 開鑛收稅하고 있다.

그 煎鍊의 法은 中國과 大同少異하다. 卽 製鍊法에 있어서 는 中國의 그것과 大同少異하다는 것이다. 그 당시엔 李朝鐵業의 選鑛技術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지구나 端川邑誌의 旣引川句에도 나타난바와 같이 每年歲貢額인 千兩을 積우기爲해서 原鑛을 製鍊하고 한편 製鍊해낸 原鑛을 다시 再製鍊하였다니 그만큼 選鑛工程에 關한 勞動支出도 詳細히 배우려졌을 것이니 確信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은 推想할 수가 있다. 卽 먼저 採掘한 鑛石된 鑛石은 肉眼鑑定으로서 良鑛과 金屬含有量이 적은 鑛石으로 選別하고 良鑛以外の 鑛石은 鐵種나 石種으로 細破하여 다시 肉眼으로 鑑定하여 良鑛을 골라내고 다 음에 남은 것을 망대에 넣어 물속에 흘도려 撰別한다. 그 때에 含有量이 많은 細粒은 밀에 가라앉 고 比重이 적은 것은 물위에 뜨니 그것을 버리고 밀에 가라앉은 것을 거두는 것과 같은 選鑛法 같은 것 일 것이니 가령 淘汰法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은 淘汰法이 아무런 技術的改良도 附加되지 않는 채도 李朝末葉에까지 踏襲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記錄으로서 알 수가 있다. 李... 遂安 稷山等과 같이 水車의 힘 을 비터 混乘法에 依하는 것도 있지만 大抵鑛石을 破碎하여 다시 이를 細分化해 이어서 金을 淘法한다. 이는 細粒으로 함에는 磨石을 쓴다 卽 花崗岩等의 堅緻한 기러 一尺五寸 幅이 約七、八寸의 岩石을 臺石으로 그 위에 同様の 岩石을 놓고 나무자루를 붙쳐 粒碎된 鑛石을 이 兩岩石사이에 넣어 人力으로서 이를 磨擦 細粒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찌던 世界諸地域의 鐵業史를 꺼들르 遡及대 올더가면 갈수록 採鑛技術보다도 選鑛製鍊技術이 相對적으로 뒷따라졌다는 鐵業技術의 不均

銜關係가 深化하는바를 찾아내지 않을수 없는데 더구나 萬式製鍊技術의 制約을 克服하기爲해서는 製鍊의 豫備採作인 選鑛作業을 精密化하는수밖에 없었고 그런만큼 選鑛技術의 歷史的意義는 무거운것이다. 그 밖에 李朝鑛業의 選鑛技術이 그 低位性을 끝까지 克服할수 없었다는것은 매우 特徵的인事實이다. 다음 製鍊工程에 關한 生産技術을 살피기爲해서는 亦是 端川邑誌에 나타난 記錄의 檢討부터 始作하지 않을수 없다.

鍊銀法 生銀을 採取해가지고 小坎(개울)을 과서 烈灰(매운재)로 쌓고 먼저 鉛片을 놓고 그우에 生銀을 敷놓은다음에 灰火의 木두리에다 松木을 덮고 불을 붙이면 鉛水가 먼저 녹(鎔)고 生銀은 차차로 銷化하여 新舊鉛水가 서두 沸騰하며 皮百中間에 忽然히 銀精이 上面에 湧이진다. 저 灰에 새엿는것(滓滲灰者)을 다시 노게서 蘆花하면 灰는 없어지고 鉛만 남는다.

府境의 諸山이 모두 濯濯해서 나무가 없는것은 나무로서 灰鍊하기때문에 모조리 없어진 山木이 미처 生長하지 못했기때문이다. ②) 바두 여기에 記錄된 製鍊法을 다른 말로 代表하면 東洋諸國의 舊式製鍊法으로서 널리 알려진 灰吹法이라는것이다.

灰吹法은(Coepellation)金 銀 銅等 貴金戶의 製鍊에 使用되는것이나 가장 자주 利用되기는 銀製鍊에 있어서이다. 그 採作法을 現代的으로 表現하면 舍銀鉛을 適當한溫度로 溶融하면서 空氣에 接觸시키면된다. 그러면 鉛은 酸化하여 酸化鉛이 되고 다른 卑金屬도 混合되었다면 그것도 酸化하여 酸化鉛에 熔合하는데 銀은 酸化하지않고 나쁘니 그래서 銀을 얻는方法이다. 燃料만 充分하면 山中에서 實踐할수있는 製鍊法으로서 歐羅巴諸國의 製鍊法도 一八五一年에 베세미(Persemer)法이 發明된 때까지 이 灰吹法에 大同少異한 製鍊法이 施行하였던點으로 미루어보아서 그다지 엄청난 低位性을 나타낸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端川邑誌의 引川句에서도 暗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燃料問題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生産技術의 低位性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歐羅巴諸國의 鐵業에서 法以前 段階에 있어서 製鍊技術에 決定的인 制約을 주는 條件은 燃料問題였다. 卽 그때까지에 利用된 主要한 燃料로서 薪木 木炭 骸炭 였는데 이 燃料의 供給量의 大小로서 製鍊量의 大小가 決定되고 따라서 製鍊量의 大小로서 採鍊量이 決定되었던 것이니 鐵業 全體的인 發展은 燃料供給狀況으로서 決定되었다. 가령 北프教授는 一五四〇年—一六四〇年間의 英佛兩國의 産業發達을 比較考察한 바 있었는데 그論文에 있어 製鍊業과 金屬器製造業의 發達狀況이 다음과 같은 規定되었다. 먼저 製鍊業에 있어서는 佛蘭西가 철신 앞선 處地에 있었다. 그原因으로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佛蘭西가 製鍊業을 爲한 燃料資原인 薪材가 豊富하였다는 事實이다. 한편 英國에 있어서 薪材飢饉이 얼마나 激甚했는가는 一五四〇年에서 一六四〇年에 이르기까지에 薪材價格이 一般物價水準에 比하여 三배나 높은 水準에 있었었다는 點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英國의 製鍊業이나 金屬器製造業은 드디어 佛蘭西의 先進性을 克服하고 말았다. 그 原因으로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英國에 있어서는 그처럼 激甚했던 薪材飢饉을 克服하기爲하여 일찍부터 石炭이 製鍊業 金屬工業의 燃料로서 登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一五四〇年에서 一六二五年에 이르기까지에 英國의 製鍊量은 五倍以上으로 增進하였으며 이런 製鍊業의 發達이 冶金業에다 著大한 刺戟을 주어서 産業革命의 過程에 있어 佛蘭西의 劣勢에 對하여 英國의 究極的勝利를 確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中國製鍊技術의 歷史的實例를 살펴 보더라도 일찍이 宋代에 薪木供給에 制限이 나타나서 그것의 克服等으로서 明代에는 碎煤 卽 煙炭을 利用하여 諸般 鑛産物을 製鍊했던 記錄이 남아 있다. 이에 反하여 李朝鑛業의 製鍊技術에 있어서는 製鍊用薪木의 利用 때문에 鑛産地의 附近一帶이 薪山이 되어가도 재로히 燃料의 技術的探策을 배부지 않았으니 이런 燃料의 制約 製鍊量의 制約 따라서 鑛業의 全體的인

發展의 制約이 連鎖的作用을 이 르킨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推想된다。어찌던 李朝 鑛業에 있어 薪木의 唯
 一한 製鍊用燃料이 있고 木炭 石炭도 利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生産技術의 低位性을 말하는 하나의
 指稱이라고 볼 수가 있다。

三 舊來鑛業勞動特質의 究明

앞에서 檢討를 마무리온 生産技術의 管理機構에 對極하는 生産技術의 遂行機構에 關한 分析이 여
 기에서 究明하고자 하는 우리의 課題이다。첫째로 鑛業勞動은 諸他勞動에 對하여 特異한 系譜를 가진 獨
 立勞動이 아니고 農業勞動의 一時的인 具擧된 것으로서 農業勞動의 派生的인 形態로 나타나는 勞動
 이다 이點을 實證하기 爲하여 다음 두가지 文獻的記錄을 引用하기로 하겠다。

一、太宗十二年(一四二二年)三月에 採銀하는 賦役을 罷하다, 慶尙 黃海道監司가 報하거늘 이제 農
 月을 맞이했다고 하므로 賦役을 罷하고 (農事)에 從事케 하였다.

二、그대가 江(暢綠江)을 건너기 전에 博川郡에 이르러 말(馬)을 내려 柳樹 밑에서 納涼하는데 男
 負女載하고 매물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八, 九歲나 되는 男女(아이)이를 데리고 마치 飢
 饉의 流離해 가는 것 같다. 물어보니 成川金穴(礦)으로 간다고 한다. 그器械를 보니 木瓢(바가지)하나
 布袋하나 저은골(小甕)하나일 뿐 풀은 땅을 파는 데 쓰고 布袋에는 담고 바가지로는 건지는 것이 다
 하루 걸러서 흙 한布袋만 건지며 不勞能食할 수 있으며 小兒女들이 더욱 잘 파고 잘 건지며
 눈이 밝은 수목 더욱 많이 얻는다는 것이다. 내가 하루 終日하면 얼마나 金을 얻느냐고 물어보니
 對答하기를 그것은 福祿(運數)에 달린 것인데 或은 하루에 여나우 알(粒)을 얻을 수 있으며 福이
 없으며 시나알(粒)에 고지며 福이 있으며 삼시에 富者가 된다고 한다. 그알(粒)이 어떻게 생겼는

나고 물으니 큰것이 거기 피날(稷穀)알만하며 農事짓는 일(制)보다 나오니 하사람이 하루에所得하는금이 적어도 六、七分(分)은 되어서 돈(錢)으로 바꾸면 二、三兩이나 되므로 비단 農戶가 太平이 概畝를 떠나서 農事일을 버리고) 모여들뿐아니라 四方의 無賴遊牛(건달)들도 모여들어 無慮 十餘萬名이 村落을 이룬다²⁵⁾

(一)의 記錄은 李朝礦業의 生産勞動이 農閑期의 農民勞動으로서 遂行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켜주는 것이며 (二)의 논란만큼 리어리스틱한 遊行記의 한 句節은 이러한 農民勞動의 臨時的인 形態變化로서 나타난 礦業勞動이 어떤 勞動支出의 形態에 있어서 礦業生産을 遂行하는點에對한 對答으로서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온 家族이 金鑛에 出動하여 八、九歲되는 아이들이 수록 보다 더 큰 勞動能率을 올린다고 記錄되어 있는바와같이 家族勞動의 形態에 있어서 採鑛 選鑛의 一貫作業을 遂行하며 이처럼 家族勞動의 形態로서 礦業勞動이 遂行된다는點에서 李朝礦業勞動의 오리지난한 形態를 찾아볼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있다. 그런데 이처럼 礦業勞動이 한편 農業勞動에서 自己分化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 家族勞動의 形態에 있어서 生産活動을 遂行한다는 두가지 事實은 李朝礦業의 生産形態속에貫流하고있는 東洋的인 封建關係의 基底를 이루는 것으로서 아래의 行論에 있어서 銘記되어야 할 要點이 되는 것이다.

물째로 이런 農業的이고 家族的인 形態로서 나타나는 礦業勞動은 生基技術의 管理機構에 對하여 어떠한 對照關係를 맺는가 다시 말하면 鑛業權이 國家에 있으면 國家에對하여 個人에 있다면 그 鑛業主에對하여 어떠한 對照關係를 가지는가 또한 李朝鑛業에 있어서의 舊式雇傭關係의 實態가 무엇인가 이런 問題를 밝히고자한다. 이點에關해서는 다음과같은 詳細한 면지 그것을 引用하기로하겠다.

本年(一八七八年頃) 九月下旬 永興管下金鑛開鑿의 報告에 據하면 金鑛의 產出이 가장 많은 곳은 咸鏡

道의 永興으로 近來 北靑府使으로 하여금 鑛山을 開掘하는 全權을 委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現今에 若手하고 있는 金鑛은 十二個所로서 事業은 모조리 民人에 付托하고 政府는 定則을 세워 鑛稅로서 永興全郡에서 一箇月에 砂金 四百目을 納付케 하였다. 그리고 鑛稅의 怠納等을 防止하기爲하여 統理衙門에서 金鑛監官二名을 選舉하여 이를 關督시키고 있으나 監官 스스로가 私利를 謀하는바가 甚함으로 官途에 있는 사람은 다 무어 監官이 될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元來 이에 任命됨에는 夥多한 身元金을 政府에 納付하는 規定이 세워져 있어 아무나 任命될 수 없다. 워낙하면 身元金은 産金의 多寡에 따라 增減이 있다 하더라도 이 永興의 監官二名은 各各 韓錢 六千貫文을 政府에 바쳤다고 한다. 다음에 德隊라고 부르는 鑛夫를 所轄하는 鑛夫頭目 같은 것이 있다. 鑛山開鑿의 事業이 있을 때마다 某는 몇百人의 鑛夫로서 그 德隊가 될려고 所轄의 官吏에 請願하여 그 許可를 얻으면 인차 鑛夫를 募集하여 이에 從事한다고 한다. 또 鑛夫 될려는 者도 德隊에 依賴함으로써 就業할 수 있음으로 鑛夫 된 者는 모두 德隊의 손을 거쳐서 納稅하는 것이 慣習으로 되었다. 그稅는 鑛夫 每人當 每月에 砂金六分을 政府에 納付하는 것이고 德隊에는 따로 三分을 納付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抗夫의 私有에 屬한다. 그러고 衣服 飲食等은 모조리 德隊가 前貸해주는 데 그代價도 또한 砂金으로서 辨價케 한다. 그러므로 鑛夫는 過分の 利益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記錄에는 永興管下 金鑛 十二所의 鑛夫數를 다음과 같이 表示하고 있다.

第五表 永興管下金坑一覽表

地名	鑛夫數	産金の品位	蓬	洞	三百名	中
琴張洞	千二百名	上	老岩洞	洞	二百名	中
今坡院	千三百名	上의上	松洞	洞	百名	上(石金)

寶幕洞 千三百名 上 朝在洞 百名 上

陵洞 三百名 下의下 別銀洞 (舊陵가 있어 共探되다)

翹洞 三百名 中 日長洞 二名 中

根皮洞 三百名 下의下 計 十二個所 五千六百名

그런데 한 鑛山地帶에 있어서 鑛業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五千六百名이나 되는 數多한 鑛夫들이 生

産技術의 管理機構에 對應하는 生産關係는 바투 앞에서 引川한 記錄에도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德階

制度 正確하게도 德大制度이다. 그러면 德大制度의 歷史的性格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밝히고자하는 問題의焦點이다. 前揭한 記錄을 다시금 檢討해보면 鑛業權의 所有者인 國家는 貢租徵收者인 監官은 採鑛場에 派遣

하여 鑛夫 每人當 每月로 生産物의 一部分을 現物地代로서 더구나 封建的인 高率地代로서 收取한다

그런데 이런 現物·高率地代로서의 鑛稅의 收取는 國家-監官對鑛夫의 直接的인 關係에 있어서 實踐되

는 것이 아니라 國家-監官對 德大經營者인 德階사이에 있어서 實踐된다. 그리고 德階對鑛夫의 關係는 다

음 세가지 紐帶로서 엮여진다. 첫째로 德大는 鑛夫에게 衣服과 食糧을 前貸한다. 鑛夫는 生産物

의 一部分으로 그것을 辨償한다. 둘째로 鑛夫는 每月 砂金 六分의 鑛稅를 德大에 바친다. 그것이 德

大를 거쳐서 監官에 이르고 다시 監官을 거쳐서 國家에 納付된다. 세째로 鑛夫는 每月 砂金三分

를 德階에 納付한다. 이제에 德階가 收取하는 砂金三分가 말하자면 手數料로서 生産管理代에 對한

國家의 報償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德大는 鑛夫에게 緊急한 生活資料는 前貸하나 道具나 其他生産手段을 貸

貸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鑛夫가 德階에 바치는 每月 三分의 砂金은 一種의 經濟外的인 支

出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또한 그런만큼 앞에서 李朝鑛業의 生産技術을 檢討할때에 把握해온바와같이 生産技術의 低位性은 每鑛夫의 勞動生産力의 低位性을 찾아오고만다. 그러나 한편 鑛稅로서 國家가 收取하는 現物地代는 高率이다. 그뿐만 아니라 李朝鑛業의 生産形態는 鑛業權所有者—國家와 鑛業勞動의 直接的인 擔當有인 鑛夫의 하점질(一重)關係로 나타나는데 이것이야니고 그사이에 實質的인 經營代理者인 德大를 介在시킴으로 特異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임으로 德大에對한 手數料만큼 附加的地代를 納付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李朝鑛業에 있어서는 低劣한 生産力과 高率의 現物地代는 으레 歲月이 흐르는 사이에 並存되어 왔으며 不均衡의 均衡은 維持되어 왔다.

어찌던 李朝鑛業에 있어서 德大制度라는 生産形態 밑에서 低劣한 生産力과 高率의 現物地代가 並存되어 왔으며 不均衡의 均衡을 維持되어 왔다는事實은 鑛夫들의 生活狀態의 悲慘을 歸結시켰다. 그리하여 「韓國誌」의 著者도 바두 永興金鑛에 關하여 다음과같이 記錄하고 있다. 「一八九〇년에는 鑛業主間에 紛爭이 생겨서 한때 採掘을 禁止하였다가 一八九〇年五月에 다시 開放하였다. 이地方의 鑛山은 이처럼 豊富하다고 하나 從業員은 모두 窮乏하다. 그것은 利益의 大部分이 官吏의 懷中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官吏는 金鑛을 얻어서는 元山에 輸送하여 日本人에 販賣한다. 金坑의 附近에는 一部落이 있는데 坑夫는 여기에 와서 日用諸品 및 飲料水를 사느라고 그所得을 消費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면 李朝鑛業에 있어서 德大制의 生産形態 밑에서 低劣한 生産力과 高率의 現物地代가 不均衡의 均衡을 維持할수 있는 秘密은 어디 있는가 그 秘密의 根源은 이미 앞에서 指定해 놓았던바 李朝鑛業의 二大特質인 零細한 家計를 補充하기爲해서 農業勞動이 臨時的으로 鑛業勞動으로 形態를 바꾸었다는 것과 그러한 鑛業勞動은 家族勞動의 形態로 나타나다는點에 숨어 있다. 卽 한편 農業生産에서 基本의 生活資料를 獲得하는데 그不足된 部分을 補充하기爲하여 農閑期의 餘暇勞動力이나 過剩勞動力을 鑛業生

産에다 支出하니 劣惡한 勞動條件에對해서도 彈力性을 갖일 수 있으며 다음에 李朝鑛業의 生産技術은 低度한 것인만큼 單純한 肉體勞動만으로서도 能히 擔當할 수 있기 때문에 家族勞動形態로서 生産活動이 逆行되는데 그적에 每人當 勞動條件의 劣惡性은 家族全體의 綜合所得으로서 補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勞動條件이라 失業보다는 遊休보다는 낫다는 價値判斷을 내리기 때문이다.

가령 中國에 있어서도 「中國의 勞動」 더구나 鑛山勞動의 最大惡의 하나는 一般的으로 雇傭勞動에 있어서의 請負制度(德大制度)인데 이것은 中國鑛業에 뿌리 깊게 蔓진 惡習이며 에적부더 이루어져있고 아직까지 猛威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테半島(Malay) 錫鑛業에 있어서도 「마테半島의 錫鑛山에 있어서 一般으로 採用되어 있는 雇傭組織은 中國人の 把頭(頭目)과 契約을 맺을 뿐이고 勞務者의 採用은 把頭에 一任한다. 따라서 鑛山側의 命令으로 把頭는 自己의 配下 鑛夫를 鑛山에 供給한다. 그러나 鑛夫의 衣食住는 把頭가 돌본다」²⁹⁾이처럼 비단 李朝鑛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東洋的 專制主義國家로서 李朝國家와 性格을 같이하는 다른 東洋諸國에 있어서도 相互로 비슷한 鑛業의 生産形態를 가추어왔다는事實은 李朝鑛業에 있어서의 德大制의 生産形態가 李朝國家의 國家의 性格 으로서 規制된 産業政策의 特殊性이던 모든 社會經濟史的背景에서 歸結된 強紐한 制度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때문 李朝鑛業에 있어서는 近代의 經營形態에對하여 前期的 經營形態인 單純協業的要素를 일즉부터 發芽시켰으나 넷프가 近世初期의 英國鑛業에關해서 斷定하듯이³⁰⁾ 卽 다른 어떤 産業에 있어서보다도 鑛業에 있어서 가장 顯著히 資本主義的 勞動者의 發生을 發見하였다는 事實과 對照하여 李朝鑛業勞動은 그 德大制의 經營形態의 뿌리깊은 制約때문에 어찌까지나 近代的 勞動에로 轉化하므로서 李朝的 經濟機構을 全體系에 있어서 近代化시킬 수 있는 芽(芽)을 抹殺하고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東洋諸國의 鑛業利權에對

한先進國産業資本의 進出過程을 究明하기나 유니크한 業績을 세운 前揭 코틴스도「金屬鑛業에 있어서의 東洋勞動者의 成功에 對한 가장 雄辯的인 試鍊은 最近일로서 그것은 朝鮮의 遂安鑛山에의 朝鮮人勞動者의 使用에 關聯하고 있다. . . .」 우리의 鑛山作業이 많은 部分이 朝鮮人의 頭目(德大)에 委託되었다고 指摘하면서 一八八五年以來 先進諸國의 産業資本이 李朝鑛業의 主要한 大部分의 領域을 侵略鑛掘하는 manner에 이르러서도 德大制의 經營方式을 採用하여 成功的인 成果를 거둘수 있었다고 斷定하고 있다.

우리는 李朝鑛業의 體軀안에 숨겨있는 數 많은 歐羅巴의 人 것에 對한 異端的要素의 集中的表現點을 李朝鑛業의 經營形態의 特殊性속에 찾고자했으며 또한 그러한 經營形態의 特殊性의 集中的表現點을 德大制度에 찾고자했다. 참으로 李朝鑛業을 貫流하는 德大制의 經營形態야말로 外國産業資本의 完全支配 밑에 있었던 그段階의 農業生産部門까지 가장 廣汎한 意味에 있어서 韓國産業構造에다 半封建的인 構造的特質을 賦與한 가장 깊은 곳에 가도 놓여진 基底的인 모멘트이었다. 勿論 韓國農業의 體內에도 그것에다 半封建的特質을 賦與한 固有한 要素를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明白해친 바와 같이 李朝鑛業에다 德大制의 經營形態라는 特質을 賦與한 가장 根源的인 要因이 農業部에 固有한 前期的인 營農形態 그것의 마지막 歸結로서 家計補充의 唯一的인 形態인 方途로서 農業勞動의 勞動에의 臨時的인 最後的轉化를 이루었다는 事實을 想起하고 또한 鑛業生産은 工業生産에 對한 不可缺的인 前提이라는 點도 아울러 想起할 적에 李朝鑛業의 遺兒인 德大制의 經營形態의 特質은 韓國經濟의 全體構造에다 半封建性을 骨肉化하도록 賦與하는 가장 重要한 모멘트인 것이다. 우리가 韓國産業史 研究의 고달픈 遊路를 發足함에 있어 分析對象으로서 李朝鑛業을 피크·앞하 것도 이때문이다.

註 一、前揭 申寅稿에서 引用하였음.

二、同上에서 再引用하였음.

- 三' K. A. Wittfogel, *wirtschaft und Gese'ischaft chinas*. 日本語譯本 上卷 一二九面에서 引用하였음。
- 四' 川崎繁太郎稿 「古文獻에 題한 朝鮮鐵業史의 產地」 (朝鮮鐵業史合誌 第十七卷 第一號所收)에서 引用하였음。
- 五' John U. Neff *Silver Production in Central Europe 1450—1618*, *Journal of politica Economy*, Aug. 1911. Pp. 575—591. 小松芳喬 紹介論文(社會經濟史學 第十一卷 第十號)을 參照하다。
- 六' 端川邑誌의 原文一部를 翻譯引用하였음。
- 七' 增補文獻備考 財用考 二肅宗十五年條 全文을 翻譯引用하였음。
- 八' 同上 肅宗十五年條 全文을 翻譯引用하였음。
- 九' 前掲 平安北道史에서 引用하였음。
- 十' 十一' 前掲 申旼稿稿에서 引用하였음。
- 十二' H. Levy, *Memories, Ca'te's and Trusts in British Industry*. 1927 P. 21.
- 十三' H. Hamilton, *English Brass and Copper Industries to 1800*. Pp. 86—98. 前掲 大塚久雄稿 七七—七八面을 參照하였음。
- 十四' 前掲 端川邑誌에서 引用하였음。
- 十五' 송파르르 近代 資本主義 第二卷 七九〇頁
- 十六' 小松悅次著 「新撰韓事情」 三二〇—二九二(洪以燧著 朝鮮科學史 二二—三四面에서 引用하였음)。
- 十七' 中國日記 第一卷 二九七面(K. A. Wittfogel 前掲 日本語譯本 上卷 一六一面에서 引用하였음)。
- 十八' 林圀經濟史, 工制總算收金條에서 翻譯引用하였음。
- 十九' 「新撰韓國事情」 三二〇、二、九面(前掲 朝鮮科學史 二二二面에서 引用하였음)
- 二十' 前掲 端川邑誌에 翻譯引用하였음。
- 二十一' Edward Cressy, *An outline of industrial History*. 1919. P. 121.에서 引用하였음。
- 二十二' John U. Neff *A Comparison of industrial Growth in France and England from 1540 to 1640* (T-

B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August and octob 1936 pp. 239-37, 505-533, 643.

686), 다만 여기서 早稻田政治經濟學報誌第五十一號에 掲載된小松芳衛紹介論文을 参照하였음

二十三、中國 鐵礦誌 二一五、二一七面、菊田太郎 翻譯「山西의 土法 製鐵」 東亞經濟論叢 第三卷 第二號를

參照하였음。

二十四、太宗實錄卷 第二十三 壬辰十二年三月條。 翻譯引用 하였음。

二十五、朴社源著 熱河日記 太學留館六條、朝鮮 光文會刊 一〇五面에서 翻譯引用 하였음。

二十六、伊藤彌次郎稿「朝鮮國鐵産의 概況」日本鐵業會誌、一八八五年十一月號에 發布된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日本鐵業會誌 第五十卷 「朝鮮鐵」에 收錄된 것에서 引用하였다。

二十七、韓國誌 鐵産條 四九面에서 引用하였음。 七三面에서 引用하였음。

二十八、B. P. Torgashev, Mining Labour in China, 一九五〇年 日本語譯文 七三面에서 引用하

二十九、C. G. Warnold - Lock, Mining in Malaya for gold and Tin 197. 小西善治譯 七二面에서 引用하

三十一、T. U. Neff the Rise of the British Coa Industy. pp. 196-197. 日本語譯本 二一八面에서 引用

하였음。 三十一、William F. Collins, Minera Enterprise in China, 一九三二年 前掲 日本語譯本 二一八面에서 引用

하였음。 이 小論은 韓國産業史研究의 첫 試圖로서 李朝鐵業의 全體的인分析을 意圖한

(追記) 李朝鐵業의 編輯事務에 關한 言明으로서 李朝鐵業의 全體的인分析을 意圖한 言明으로서

다. 따라서 李朝鐵業의 形式으로서 斷行되었던 外國鑄貨의 輸入政策이 李朝鐵業에 對한 侵入過程에 關한 分析을 揭載한 것이나

로서 外國鑄貨의 形式으로서 斷行되었던 外國鑄貨의 輸入政策이 李朝鐵業에 對한 侵入過程에 關한 分析을 揭載한 것이나

의고 外貨輸入을 序曲으로 하는 先通鑄國의 産業資本의 鐵業部面에 對한 侵入過程에 關한 分析을 揭載한 것이나

별의 다른 機會를 捕捉하여 그것마저 發表하여 모든 사람의 注意를 끌고 있다. 111